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895-01

수탁보고 2020-17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박창현·김근진·김경희·김민주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895-01

수탁보고 2020-17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

자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김민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경 희 (중부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민 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0-17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별관 13층)
전화 044-202-2118
팩스 044-202-3910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895-01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	---

I. 서론	15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4. 선행연구	22
5. 연구의 방향 및 한계	24

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현황 분석	25
--------------------------------------	----

1. 관련 통계 현황	27
2.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41
3.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70

I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	--

개편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편(안) 설계	87
-------------------------	----

1. 조사개요	89
2. 조사결과	89
3. 개선방안 조사결과	91
4. 3단계 설계 모형 및 특별직무교육과정(안)	95

I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	--

개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99
-----------------	----

1. 조사개요	101
2. 조사결과	104

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 121

- 1. 개편 방향 123
- 2. 정책과제 130

참고문헌 139

부록 145

-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델파이 조사 패널 명단 145
 -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1차 델파이 조사지 147
 - 3.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2차 델파이 조사지 151
-



표 목차

〈표 Ⅰ-3- 1〉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	20
〈표 Ⅱ-1-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보건복지부)	27
〈표 Ⅱ-1- 2〉 시·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보건복지부)	28
〈표 Ⅱ-1- 3〉 시·도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보건복지부)	29
〈표 Ⅱ-1- 4〉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30
〈표 Ⅱ-1- 5〉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30
〈표 Ⅱ-1- 6〉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2016~2020.9)	32
〈표 Ⅱ-1- 7〉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증을 소지한 교사 중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당, 직무수당 수급 교사 수 및 지급액(2016~2020.9)	35
〈표 Ⅱ-1- 8〉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38
〈표 Ⅱ-1- 9〉 연도별 어린이집 유아 특수교사 수('12~'20년)	39
〈표 Ⅱ-1-10〉 어린이집의 일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의 일반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수당, 봉급, 보조인력지원, 근무시간 비교분석(2020)	40
〈표 Ⅱ-2-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44
〈표 Ⅱ-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6
〈표 Ⅱ-2- 3〉 특수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47
〈표 Ⅱ-2- 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장특법)	48
〈표 Ⅱ-2-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2019.2.20.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49
〈표 Ⅱ-2- 6〉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관련 규정	50
〈표 Ⅱ-2- 7〉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장복법)	52
〈표 Ⅱ-2-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54
〈표 II-2- 9〉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	57
〈표 II-2-10〉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8
〈표 II-2-1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특수교사 무시험 검정	59
〈표 II-2-1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일반교사 무시험 검정 방법	59
〈표 II-2-13〉 특수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기준	61
〈표 II-2-14〉 특수교사 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을 위한 이수 교과	62
〈표 II-2-1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62
〈표 II-2-1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용	63
〈표 II-2-17〉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기관 및 실시내용	63
〈표 II-2-18〉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64
〈표 II-2-19〉 장애아보육료 지원단가(2020)	64
〈표 II-2-20〉 장애아 보육지원	64
〈표 II-2-2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	66
〈표 II-2-2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67
〈표 II-2-23〉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68
〈표 II-2-24〉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70
〈표 II-3- 1〉 국내 우수사례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학점	71
〈표 II-3- 2〉 시험 실시과목과 취득 가능한 보통면허증의 종류 등	78
〈표 IV-1- 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102
〈표 IV-1- 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3
〈표 IV-1- 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3
〈표 IV-2- 1〉 모형(안)에서 설정한 단계 구성과 각 단계별 영역 구성에 대한 전반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04
〈표 IV-2- 2〉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의견 조사 결과	106
〈표 IV-2- 3〉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시간 구성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111
〈표 IV-2-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안)	115
〈표 IV-2- 5〉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118
〈표 V-1-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 예시(안)	130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수행체계	21
[그림 II-1-1]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30
[그림 II-1-2]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31
[그림 II-1-3] 연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격수당 지급액 현황 (2016~2020.9)	37
[그림 II-1-4] 연도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자격수당 지급액 현황 (2016~2020.9)	37
[그림 II-1-5]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39
[그림 II-3-1]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72
[그림 II-3-2]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구성 내용	72
[그림 II-3-3] 일본 특수교사자격증 과정	77
[그림 II-4-1] 3단계 설계 모형(안)	95
[그림 II-4-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과정 예시(안)	96
[그림 IV-2-1] 현행 제도의 개선(안) LFF 분석결과	106
[그림 IV-2-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안) LFF 분석결과	116
[그림 IV-2-3]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LFF 분석결과	118
[그림 V-1-1] 현행 제도 개편 방안 예시	125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영유아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택 여부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크게 경험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가기 어렵고, 양질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의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런 흐름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배치기준이 강화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6년 3월 1일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였음.
- 자격확인서 교부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교사의 수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적정수준의 교사인력 수급과 배치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의 특수한 보육 수요에 적합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교사를 유입할 수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자격·양성체계 분석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의 현황을 분석함.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도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방안, 특별직무교육과정(안)을 제안함.
- 유아특수교사제도 등의 자격 및 양성과정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장애영유아 담당교사들의 수요를 예측해 보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안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과 교사의 전문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관련 통계 자료, 법령, 정책 등을 분석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및 유아특수교사 정책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학계 논문(국내외) 등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파악함.

□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교사양성기관 및 재교육기관 등 관련자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약 6~7명을 대상으로 FGI 또는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도출함.

□ 전문가 의견 조사

- 장애영유아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자, 행정가 등) 대상으로 40여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2회 실시함.

□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 방향 설정, 면담 내용 구성,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라. 선행연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관련 연구

- 김영숙(2008)은 장애아보육정책 관련 법에 장애아보육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가제도나 양성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음.
- 조윤경·송정(2012)은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수가 부족하여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은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관련 연구

- 박현옥·최민숙(2005)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국가나 학회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노진아(2007)은 교육과정을 재개편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양성과정의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순자·김병진·박유정(2017)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장 교육실습을 보다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음.
- 박현옥·강혜경(2018)은 전문성을 가진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과정-현장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마. 연구의 방향 및 한계

□ 연구의 방향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인 장애영유아보육교사제도에 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최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 제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3단계 모형안은 부처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이 제안한 안임. 바로 현장에서 실현되기에는 추후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회 진행하였는데, 1차 조사가 개방형 질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차례 정도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40명 전문가는 대다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며, 이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현황 분석

가. 관련 통계 현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현황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개 기관이었음. 유아특수교사 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262명)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375명) 보다 적었음.
-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9,157건에 이름.
-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최근 5년 연속 가장 많았음.
- 연도별, 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소지한 교사 중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당 수급 교사 수 및 지급액 현황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였음.
-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연도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자격수당을 살펴보면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유아특수교사 현황

- 특수학교(유치원)(1, 2급) 교사자격증은 특수학교(1, 2급) 자격증 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인원 수에 비해 유아특수교사 임용 인원은 약 12%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비교

- 어린이집의 일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의 일반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수당, 봉급, 보조인력지원, 근무시간을 비교분석함.

나.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 법 제도 분석

- 장애영유아 교사의 자격·양성 관련 법 제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및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영유아 복지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특수교육 이외 장애영유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서는 장애 유아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아 3명마다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해야하고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사 자격(검증) 제도

- 특수학교,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특수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기준 및 특수교사 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을 위한 이수 교과를 살펴봄.

다.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 국내 사례 및 동향

- 국내 우수사례 양성기관(한국복지대학교, 연성대학교)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김승현·원종례·안의정(2016)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의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실행함.

□ 국외 사례 및 동향

- 미국: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교사 경력 2년 후 대학원 특수교사 프로그램에 입학/별도의 특수교육학도가 4년제 학부과정으로 되어있는 경우/4년제 학부과정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독일: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및 교직전공을 하고, 1-2차 국가시험제도를 거쳐야 함. 1차와 2차 국가시험 사이에 수습교사제도를 두고 있음. 2차 국가시험 이후, 대학원과정과 연수 등 심화교육으로 연결됨.
- 일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자격증 이외에 특별지원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

3.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편(안) 설계

가. 조사개요

- 핵심 참여자들(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 교사 및 교수 그룹,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요구를 수렴하였음. 이를 토대로 3단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모형(안)을 제시함.

나. 조사결과

□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 의견

- 수당을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는 교사들이 급증하였음. 그렇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들이 존재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유아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 퇴보라고 생각되지 않음.

□ 교사 그룹 의견

- 자격 확인서가 쉽게 딸 수 있어 교사의 질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라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뉨.

□ 한국보육진흥원 의견

- 수당 지급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남발이 아니라 교사 자질의 문제임. 실습이 중요하지만 실습기관의 수가 부족한 실정임.

□ 교수 그룹 의견

- 자격확인서 취득에 실습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조건을 강화시켜야 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한 채 현장 경험이 있으므로 유아특수교사보다 더 나은 조건일 수도 있음.

다. 개선방안 조사결과

□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 의견

- 자격확인서 조건, 지역 체계 시스템 강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 및 봉급표 개선을 해야 함.
- 유아특수교사 유인책으로 유아특수교사 코디네이터, 어린이집 경력 인정을 제안함.
- 보수교육을 강화시키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함.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폐지가 필요함.

□ 교사 그룹 의견

- 실습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보육교사 1급일 경우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도 좋겠음.
- 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1급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면 좋겠으며, 수당 지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 의견

- 교과목 재구성 및 강화가 필요하며, 종전 교과목은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유형별, 수준별, 연령별 차이를 기준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교수 그룹 의견

- 교과목 재구성 및 실습과 대면 교육을 강화시키고 필수과목(장애아실습, 진단과 평가, 교수방법, 통합학급 운영 등)을 지정해야 함.
-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복무, 방학, 노동조건(근무시간 등), 정년, 승급, 인식과 위상의 문제 때문임.
- 관련학과 석사졸업자의 경우, 1년 또는 2년 장애반 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가. 조사개요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체계 3단계 설계 모형(안)과 특별 직무교육과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연구수행을 위해 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였으며,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음. 연구진은 회의를 거쳐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방형으로 서술된 내용들에서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다룰 유의미한 문항들을 추출하였음.

나. 조사결과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설계모형(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 ‘매우 타당하다’와 ‘타당한 편이다’에 응답한 전문가는 34명으로 전체 40명 중 85% 였음.

- 소수의 반대의견으로는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개선하거나(1단계), 급수제 마련(2단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봄. 3단계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1번(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이후 ‘교과목’으로 통일)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 필요), 2번(현행 교과목에 이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 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4번(교과목의 60% 정도를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여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 5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7번(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촉진을 위해 직무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지급액 상향)의 5개 방안이었음.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 이수 과목 수와 학점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선 필수와 선택 과목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음.
-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시간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판단을 조사한 결과, 40시간 이상~80시간 이하가 37명으로 전체 40명 중 92.5%였다. 특히 40시간에서 80시간 미만은 29명으로 72.5%였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1번(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2급 취득 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3년(장애아반 담임)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취득 가능), 2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 개설, 이는 1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5번(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제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6번(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 가능)의 4개 방안이었음.

□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2번(특수보육교사 2급과 1급 체제로 운영하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과 3년 현장경력제도 운영), 3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 이는 1, 2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6번(「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 구성)의 3개 방안이었음.

5.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

가. 현행제도 개편 방안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과목을 늘리고, 실습과 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1-2과목을 수강하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그림 1] 현행 제도 개편 방안 예시

〈정책목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 제고	
단계(안)	1단계
정책영역	현행 제도의 개선(안)
주안점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교과목(학점)을 추가하고, 실습과 대면 교육 강화 •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정책 대상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자격 양성	• 현행 16과목(48학점) 과목 추가 • 필수과목지정(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단 및 평가,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교육) • 대면 교육 60%
보수 교육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 4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 사례 및 실습 중심(실제 및 워크샵)

나. 특별직무교육과정(안) 신설 제안

-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을 근거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함. 보육 현장의 여건과 현직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시간을 50시간으로 배정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면 교육과 실행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함.

〈표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과정 예시

영역	강의명	시간
교수법	1. 교수방법의 실제(감각운동, 치료놀이 등) 2.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2
교육진단 및 교육계획안	1. 교육진단의 실제	3
	2. 현행 수준 요약서 작성	3
	3. IEP작성 workshop	3
IEP 적용	1. 일과운영에서의 IEP적용의 실제	4
	2.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IEP적용의 실제	4
	3. IEP 평가 실제	3
통합교육	1. 통합반에서의 교사 및 전문가 간 협력 방안	3
	2. (비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3
	3. 장애, 비장애 영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 지도의 실제	3
가족지원	1. 부모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실제	3
	2. 가족상담의 실제	3
	3. 가정연계프로그램의 실제	3
->	60% 이상 대면 교육, 30명 이하 소집단 교육)	50시간

2. 정책과제

가. 정책과제 1: 현행 교과목 재구조화

1) 추진전략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현행제도 개편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상의 교과목 이수기준 상향조정, 필수교과목 지정 등의 개편과 함께, 교과목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개편도 함께 진행될 필요함. 현행자격제도 개선 시 종전 자격기준(8과목 16 학점)은 법 개정을 통해 삭제가 필요함.

2) 추진전략 1-2: 교과목 추가와 필수교과목 설정

- 원격수업의 특성상 한 학기 8과목 이상 설제가 불가능하므로, 1학기 2학기 나누어 16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48학점 정도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필수교과목으로는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단 및 평가,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교육을 제안함.
- 16과목으로는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긍정적행동지원지도, 정신지체아지적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교육, 특수교육 측정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개입 등을 제안함.

3) 추진전략 1-3: 인권보육 기반 교과목 구성

- 장애영유아 인권 강화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도 ‘정신지체아교육’이라는 교과목명은 속히 삭제할 필요가 있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의 근본 철학은 인권보육에 기반하도록 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 개발과 보완이 필요

나. 정책과제 2: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통합연수체계 구축

1) 추진전략 2-1: 한국보육진흥원(허브)-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전문적학습공동체(교사) 연수체계 구축

- 한국보육진흥원을 허브로 특별직무교육의 예시를 만들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용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고, 지역별로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교과목과 이수기간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듣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기관을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인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추가시간을 인정해주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음.

2) 추진전략 2-2: 원격 및 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 연수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고, 콘텐츠도 다양하지 않아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격수업 시행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보수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함.
- 특히 대면교육을 6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혼합되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이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원격과 대면을 혼합하여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그룹 화상수업 등으로 원격수업에서 개별성과 쌍방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개편안 지원 정책 제안

-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공식 루트 확대
-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수당체계 재설계화 연구 필요
- 3) 범부처 통합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 4) 급수제, 특수보육교사제도 도입에 관한 심화연구 필요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연구
- 05 연구의 방향 및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보육과 유아교육 체제는 이원화되어 있고, 현재 유보통합의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취약 보육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고, 양질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기관 선택의 폭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택 여부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크게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가기 어렵고, 양질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장애영유아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나,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나 4-5세 의무교육, 학제개편 등의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과제들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아특수교사 정책을 개편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방법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의 개편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현재 유-보가 이원화 구조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는 단기 유인책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의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위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12년 신설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2011. 8. 4. 제정, 2012. 8. 5. 시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4. 18.)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배치기준이 강화되어, 2018년부터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에 따라 2016년 3월 1일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8).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이다.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를 시작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9,157건에 이른다(한국보육진흥원, 2020).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학점제 등을 통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격확인서를 취득하려는 대상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격증 발급으로 교사의 수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의 편차를 가늠하기 어렵고, 적정수준의 교사인력 수급과 배치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배치 기준 및 양성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과정에 관한 정책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장애영유아의 특수한 보육 수요에 적합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교사를 유입할 수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보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과 양성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양질의 교사가 부족함 없이 장애영유아를 보육·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현장에서 장애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분석

첫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등)와 유아특수교사의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교사 처우(수당, 본봉 등)와 복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유아특수교사들의 전문성 개별 영역인 사례, 공식 자격 취득과정(학위과정), 보수교육과정 등을 분석한다. 국내 사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를 살펴보았다.

나.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도출

첫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방안, 특별직무교육과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특수교사제도 등의 자격 및 양성과정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들의 수요를 예측해보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과 교사의 전문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에 관한 현황과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 법령,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및 유아특수교사 정책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학계논문(국내외) 등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나.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교사양성기관 및 재교육기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FGI 또는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약 6~7명 대상으로 FGI 또는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에 관한 현황, 개선점, 추후 정책 방향, 양성기관 국내 우수사례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는 <표 I-3-1>와 같다.

<표 I-3-1> 자문회의 일시, 안건 및 참석자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1차	2020.8.1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에 관한 현황, 개선점, 추후 정책 방향 논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협의회 관련 관계자 3인
2차	2020.8.2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에 관한 현황 및 문제의식, 개선점 및 정책 방향	전국장애아동교사협의회 1인, 공공운수노조 1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2인, 교사 1인
3차	2020.9.2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관련 의견 수렴, 관련 통계자료 요청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교육운영팀 팀장 각 1인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4차	2020.11.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자문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대표 1인
5차	2020.11.11.	장애영유아 관련 양성기관 국내 우수사례 조사	장애영유아보육과, 유아특수 재활학과, 유아교육과 교수 각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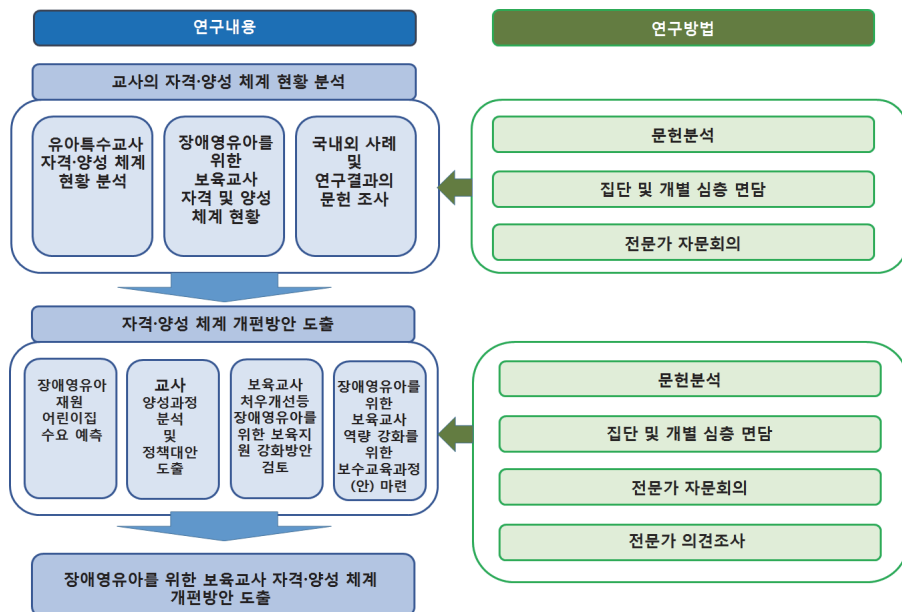
다. 전문가 의견 조사

장애영유아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자, 행정가 등) 대상으로 40여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라.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면담 내용 구성, 정책 시사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부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진과 수시로 협력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하였다.

[그림 I-3-1] 연구수행체계



4. 선행연구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관련 연구

김영숙(2008)은 장애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아보육정책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장애아보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장애아보육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나 ‘양성과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는 일반보육교사가 특수교사의 약 3.3배가 배치되어 있어, 장애아가 대부분 일반보육교사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제도와 전문가양성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윤경·송정(2012)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아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의 원장 2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수가 부족하여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담당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배치, 일반교사의 장애 이해, 재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다른 자격에 대한 역할과 급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한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연구에서는 교사 양성과 자격체계의 정비 및 수급 관련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장애영유아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한 박창현·김근진·이은혜·배율미(2019) 연구에서도 장애 영유아 교사 자격제도가 개편되어 교사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현직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관련 연구

박현옥, 최민숙(2005) 연구에서는 국내 유아특수교육과의 현행 교육과정을 미국특수교육학회(CEC, 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행준거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국내는 유아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원 과정이 부족하여 기초지식의 교육과정이 대부분으로, 전문인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국가나 학회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진아(2007)는 유아특수교사의 양성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자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질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개편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최소 교사자격 기준 및 교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양성과정에서 그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순자, 김병진, 박유정(2017)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학의 유아교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며 지원해주는 중앙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유아교육교사 교육과정은 미국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목의 종류 및 다양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하였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역량제고와 이에 근거한 교사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현장 교육실습을 보다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현옥, 강혜경(2018)은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을 탐색해보았다. 유아특수교육 기관의 교장 및 교사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는데, 예비유아특수교사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유아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성을 위해 실무 역량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려면 양성과정-현장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소결

이상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와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가 근무할 경우, 특수학교와 동등한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교사와

의 역할, 급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유아특수교사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현장실습 강화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실습 제도를 점검하고, 자격 관련 교과목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연구의 방향 및 한계

본 연구의 방향성에 근거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제도에 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법령, 수당,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등을 포함한 3단계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는 최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교사의 질 제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3단계 모형안은 연구진이 제안한 안으로 부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바로 현장에서 바로 실현되기에는 추후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모형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예상되는 법령 개정과 수당에 대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회 정도를 진행하였는데, 1차 조사가 개방형 질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차례 정도의 조사를 더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인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40명의 전문가들은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였으나, 유치원 정책보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상호 추천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적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도 정식 루트가 소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40명의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소수의 전문가들은 대다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로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다수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며, 이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전문가 의견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며 전문가 의견 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현황 분석

- 01 관련 통계 현황
- 02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 03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현황 분석

1. 관련 통계 현황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현황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176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1,190개였다. 그 중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62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375명으로 총 637명이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기관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다 부족한 실정이었다.

〈표 II-1-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구분	기관수	교사 자격 현황					계	부족한 특수 교사 수	치료사 수
		①유아 특수 교사	②특수 교사 인정 수료자	③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④일반 보육 교사	⑤기타 교사			
장애아전문	176	200	297	492	0	384	1,373	262	545
장애아통합	1,190	102	277	725	0	490	1,594	375	87
계	1,366	302	574	1217	0	874	2,967	637	632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
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
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시·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및 배치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표 II-1-2>와 <표 II-1-3>을 통해 볼 수 있다.

<표 II-1-2> 시·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명

구분	장애아동 현원				교사 자격 현황						부족한 특수 교사 수
	만0~2 세	만3~5 세	만6세 이상	계	① 유아 특수 교사	② 특수 교사 인정 수료자	③ 장애 영유아 보육 교사	④ 일반 보육 교사	⑤ 기타 교사	계	
서울	16	91	85	192	9	15	8	0	15	47	11
부산	30	286	209	525	8	33	32	0	71	144	35
대구	55	355	353	763	13	38	88	0	42	181	40
인천	9	89	9	107	6	4	22	0	1	33	5
광주	35	185	258	478	28	24	27	0	21	100	14
대전	3	51	40	94	5	3	12	0	4	24	3
울산	4	51	86	141	3	4	17	0	6	30	7
세종	5	18	1	24	3	1	3	0	0	7	1
경기	57	386	171	614	29	38	39	0	63	169	26
강원	8	50	65	123	2	3	8	0	8	21	4
충북	29	132	40	201	11	6	23	0	9	49	10
충남	27	214	72	313	18	7	41	0	11	77	17
전북	17	106	218	341	18	9	23	0	9	59	10
전남	65	255	191	511	5	41	34	0	36	116	17
경북	62	352	299	713	13	29	62	0	36	140	26
경남	44	352	273	669	29	36	53	0	35	153	31
제주	20	55	52	127	0	6	0	0	17	23	5
총계	486	3,028	2,422	5,936	200	297	492	0	384	1,373	262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표 II-1-3〉 시·도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보건복지부)

단위: 명

구분	장애아동 현황				교사 자격 현황						부족한 특수 교사 수
	만0~2 세	만3~5 세	만6세 이상	계	① 유아 특수 교사	② 특수 교사 인정 수료자	③ 장애 영유아 보육 교사	④ 일반 보육 교사	⑤ 기타 교사	계	
서울	63	1,531	111	1,705	45	124	177	0	227	573	134
부산	10	156	4	170	2	13	22	0	16	53	20
대구	8	59	11	78	0	8	13	0	2	23	8
인천	24	395	15	434	4	15	106	0	17	142	33
광주	0	13	0	13	1	2	0	0	1	4	1
대전	6	41	10	57	0	1	11	0	4	16	2
울산	4	94	5	103	1	8	15	0	9	33	13
세종	6	14	0	20	0	1	1	0	4	6	2
경기	81	1,547	73	1701	36	82	284	0	156	558	119
강원	6	65	3	74	1	6	13	0	2	22	2
충북	2	23	1	26	1	1	5	0	2	9	2
충남	5	47	2	54	0	1	13	0	3	17	3
전북	7	36	19	62	6	2	5	0	1	14	3
전남	3	36	1	40	1	2	6	0	4	13	3
경북	9	80	3	92	1	2	17	0	8	28	7
경남	7	113	7	127	3	5	27	0	7	42	14
제주	7	126	1	134	0	4	10	0	27	41	9
총계	248	4,376	266	4,890	102	277	725	0	490	1,594	375

주: 1. 2020. 8월 말 운영 기준

2. ① 유아 특수교사: '유아정교사 1급', '유아정교사 2급' 인 특수교사

3. ②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4. ③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소지자

5. ④ 일반보육교사(장애아직무교육수료):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아보육 직무교육(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6. ⑤ 기타교사 : ① ~ ② + ③ ~ ④에 해당하지 않은 교사(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를 시작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9,157건에 이른다. 2018년은 전년도인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1.4배,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약 1.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1-4〉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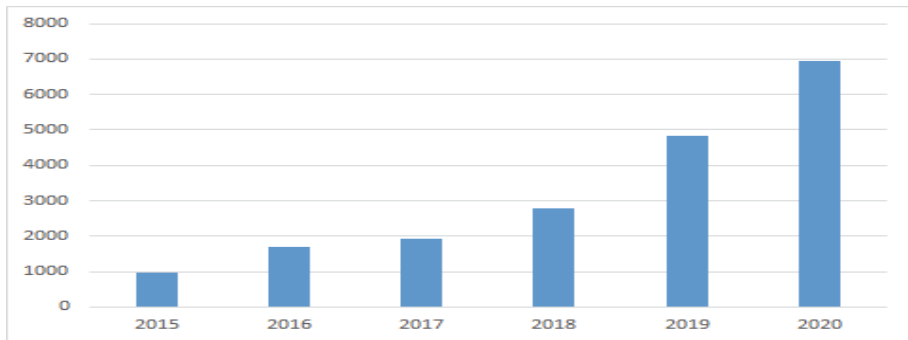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발급 현황	958	1,709	1,928	2,786	4,827	6,949	19,157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8.31.

2.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교부업무 시작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내부자료.

[그림 II-1-1]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주: 〈표 II-1-4〉을 도식화함.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5,7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이 3,376건이었다. 발급 현황이 1,000건 대인 지역은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제주(248건), 광주(378건), 강원(398건)으로 발급 현황 수가 적었다.

〈표 II-1-5〉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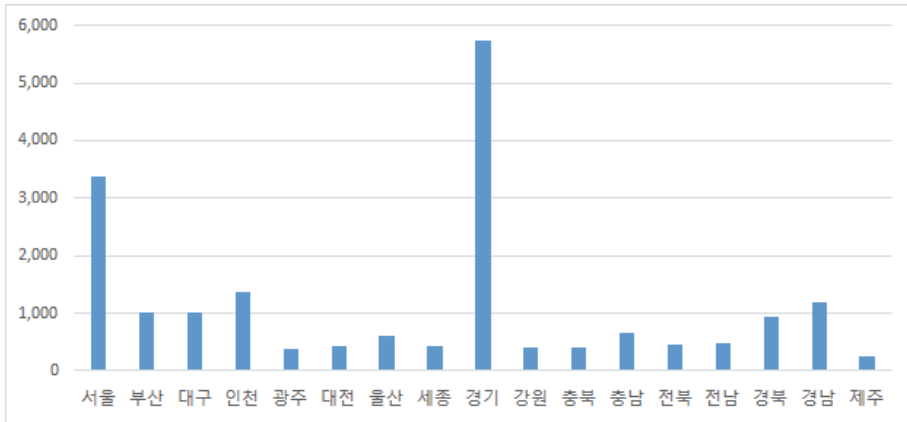
지역	발급 현황	지역	발급 현황
서울	3,376	강원	398
부산	1,011	충북	411
대구	1,013	충남	671
인천	1,359	전북	466
광주	378	전남	484
대전	430	경북	928
울산	607	경남	1,201
세종	432	제주	248
경기	5,744	총 계	19,157

주: 1. 기준일자: 2015.7.1.~2020.8.31.

2. 지역은 자격확인서 수령지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내부자료.

[그림 II-1-2] 시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주: <표 II-1-5>를 도식화함.

2016년~2020년 9월 말까지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을 <표 II-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대구광역시 63명, 그 뒤는 전라남도가 52명 순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가 118명, 서울특별시가 64명 순으로 많았다. 다음해 2017년에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89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72명)가 많았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전년도와 같이 경기도(202명), 서울특별시(143명) 순으로 많은 수를 나타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은 2017년과 동일하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순이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순이었다. 2020년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대구광역시가 143명, 경상북도가 124명 순으로 많았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가 1,189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가장 많은 수를 유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956명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최근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1-6〉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2016~2020.9)

구분	2016				2017				2018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기타	계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기타	계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기타	계
서울특별시	9	64	9	82	13	143	46	202	18	204	98	320
부산광역시	36	13	2	51	50	22	9	81	58	29	18	105
대구광역시	63	5	1	69	89	18	8	115	113	22	19	154
인천광역시	4	19	6	29	11	34	16	61	15	72	34	121
광주광역시	46	0	0	46	63	0	3	66	73	0	7	80
대전광역시	9	7	5	21	12	12	6	30	19	17	10	46
울산광역시	29	2	2	33	49	5	8	62	71	13	13	97
세종특별자치시	0	0	1	1	2	0	4	6	5	0	10	15
경기도	21	118	21	160	44	202	63	309	53	270	145	468
강원도	17	5	2	24	20	7	6	33	24	12	14	50
충청북도	21	2	3	26	30	2	1	33	43	4	11	58
충청남도	20	2	2	24	44	7	2	53	53	14	6	73
전라북도	14	8	1	23	34	10	3	47	43	8	10	61
전라남도	52	3	4	59	62	4	7	73	74	7	12	93
경상북도	29	3	7	39	43	15	11	69	75	23	36	134
경상남도	51	1	8	60	72	11	16	99	76	16	26	118
제주도	0	0	0	0	0	2	4	6	1	9	5	15
총계	421	252	74	747	638	494	213	1,345	814	720	474	2,008

단위: 명

주: 1. 해당월말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재원중인 직위가 '보육교사' 인 보육교직원 수
2. 기타: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표 II-1-6〉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소지 교사의 재직 현황(2016~2020.9)(계속)

구분	2019				2020.9월 말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기타	계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기타	계
서울특별시	17	291	180	488	23	956	319	1,298
부산광역시	56	33	44	133	58	92	84	234
대구광역시	138	37	33	208	143	50	78	271
인천광역시	24	112	72	208	27	312	131	470
광주광역시	82	0	12	94	78	0	23	101
대전광역시	21	18	27	66	24	26	45	95
울산광역시	71	51	22	144	88	99	34	221
세종특별자치시	2	2	15	19	5	15	30	50
경기도	80	366	230	676	84	1,189	509	1,782
강원도	20	21	25	66	24	43	48	115
충청북도	41	8	20	69	50	11	47	108
충청남도	69	18	36	123	68	30	62	160
전라북도	52	17	19	88	58	21	36	115
전라남도	79	5	16	100	96	22	20	138
경상북도	87	27	53	167	124	31	85	240
경상남도	104	38	52	194	120	67	121	308
제주도	2	9	6	17	10	62	15	87
총계	945	1,053	862	2,860	1,080	3,026	1,687	5,793

주: 1. 해당월말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재원중인 직위가 '보육교사' 인 보육교직원 수
2. 기타: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교사 수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2016년~2020년 9월 말까지 연도별, 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증을 소지한 교사 중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당 수급 교사 수 및 지급액 현황을 <표 II-1-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교사 중 수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최근 5년 연속 대구광역시였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기도였다. 이는 교사의 재직 현황이 많은 지역으로, 재직 수가 많음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 받은 수도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도를 살펴보면, 직무수당이 개설된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지역에서 자격수당을 지급받은 교사의 수보다 직무수당을 지급받은 교사의 수가 적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1-7〉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증을 소지한 교사 중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당, 직무수당, 지급 교사 수 및 지급액(2016~2020.9)

단위: 명,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교사수	지급액	교사수	지급액	교사수	지급액	교사수	지급액	교사수	지급액	교사수	지급액
서울특별시	9	15,200	57	81,057	16	24,200	131	189,477	19	38,453	193	328,129
부산광역시	37	60,941	5	8,800	53	103,828	14	22,470	66	131,187	24	33,374
대구광역시	63	101,800	6	6,400	97	185,187	19	27,827	130	254,452	26	47,161
인천광역시	4	5,800	22	28,200	12	22,670	36	57,688	22	33,000	67	114,026
광주광역시	46	64,800	0	0	71	128,000	0	0	77	161,638	0	0
대전광역시	11	16,400	5	8,200	15	23,322	12	19,800	22	40,400	20	33,200
울산광역시	31	42,060	1	1,800	60	99,194	6	8,000	75	141,329	15	22,530
세종특별자치시	0	0	1	200	2	2,200	0	0	6	7,600	0	0
경기도	20	32,200	113	166,200	42	67,400	206	350,619	46	87,400	268	443,451
강원도	14	21,400	5	7,000	23	40,083	8	9,600	26	51,200	10	16,490
충청북도	17	29,000	2	3,000	38	65,600	2	3,400	50	93,800	5	7,600
충청남도	21	32,800	2	2,600	49	76,698	6	11,600	67	114,466	9	19,600
전라북도	18	16,800	2	1,600	37	68,200	4	4,600	50	89,800	7	9,800
전라남도	52	81,800	1	2,000	72	134,771	2	4,400	77	143,800	3	6,800
경상북도	29	38,000	3	4,800	44	77,000	15	24,800	77	143,361	28	43,800
경상남도	53	78,400	0	0	81	140,735	11	16,000	92	167,064	16	30,600
제주도	0	0	0	0	0	0	1	200	1	2,400	6	4,400
계	425	637,401	225	321,857	712	1,259,092	473	750,483	903	1,701,352	697	1,160,993

주: 1. 연도: 보조금 대상월 기준
 2. 지급액: 천단위 절사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표 II-1-7〉 연도별·지역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증을 소지한 교사 중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당, 직무수당, 직무수당 수급 교사 수 및 지급액(2016~2020.9)(계속)

구분	2019				2020.9월 말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장애이전문				장애이통합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지력수당 교사수	지급액
서울특별시	19	56,100	260	591,100	23	31,100	19	16,800	927	580,110	305	240,551
부산광역시	79	209,502	29	72,125	62	94,945	54	47,700	87	56,368	27	24,300
대구광역시	159	449,023	44	91,500	171	245,354	140	124,876	61	64,300	37	29,100
인천광역시	29	70,052	112	274,634	32	43,567	25	22,500	291	220,608	119	103,800
광주광역시	91	266,700	0	0	94	132,595	74	65,400	-	-	-	-
대전광역시	24	71,100	21	48,600	24	35,850	20	17,400	24	23,600	14	12,000
울산광역시	88	235,196	46	99,305	91	133,900	84	71,729	107	100,817	62	55,800
세종특별자치시	6	11,400	0	0	6	7,390	5	4,500	8	1,500	2	1,200
경기도	87	206,707	328	809,583	96	131,967	74	63,900	1,135	930,293	638	521,582
강원도	28	74,779	14	39,348	24	35,829	23	15,600	40	34,840	19	16,500
충청북도	56	143,699	6	16,800	51	81,090	47	43,054	11	11,100	6	5,400
충청남도	80	201,416	14	33,000	79	114,950	65	56,700	25	24,800	15	12,774
전라북도	61	167,143	17	33,437	61	95,100	60	50,400	20	29,632	17	13,906
전라남도	82	252,300	4	6,600	97	146,406	91	77,700	21	12,302	10	6,600
경상북도	108	253,274	29	67,500	130	175,041	118	99,971	27	34,500	20	17,100
경상남도	113	316,914	31	77,796	123	181,091	111	97,141	61	64,300	40	30,000
제주도	1	3,600	8	19,500	9	7,500	8	5,400	55	31,200	32	26,400
계	1,111	2,988,910	963	2,280,832	1,173	1,693,681	1,018	880,773	2,900	2,220,273	1,363	1,117,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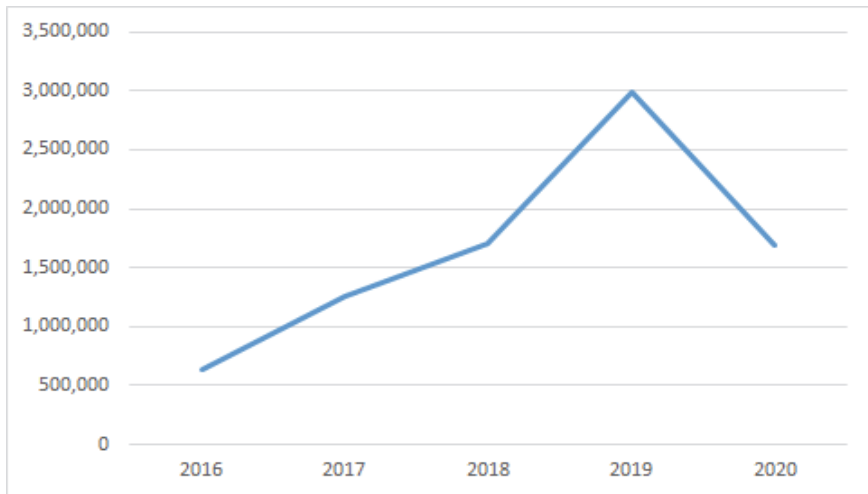
단위: 명, 천원

주: 1. 연도: 보조금 대상월 기준
2. 지급액: 천단위 절사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단위: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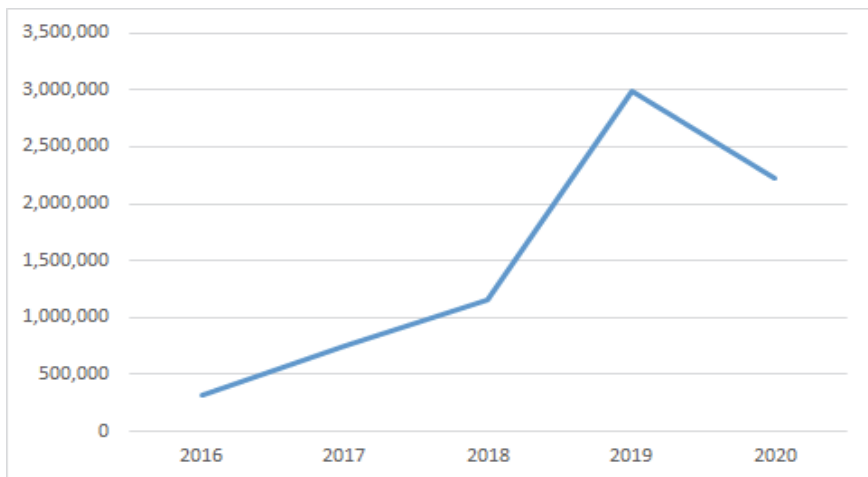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연도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자격수당을 살펴보면 자격수당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격수당은 전년도 대비 176% 증가하였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257% 증가하였다.

[그림 II-1-3] 연도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격수당 지급액 현황(2016~2020.9)



주: <표 II-1-7>을 도식화함.

[그림 II-1-4] 연도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자격수당 지급액 현황(2016~2020.9)



주: <표 II-1-7>을 도식화함.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수, 아동 수, 보육교직원 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와 장애아동 현원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많았고 (102개소, 3,859명),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964개소, 3,800명).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많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유아특수교사 현황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1, 2급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1, 2급) 교사자격증의 경우 2011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622명이 발급을 받았다. 이후 2012년, 2014년, 2017년에 100명대의 인원수가 발급을 받았지만 다른 연도에는 100명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특수학교(유치원)(1, 2급) 교사자격증은 특수학교(1, 2급) 자격증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적게는 2012년에 299명, 많게는 2015년에 534명, 2020년에 623명이 발급을 받았다. 누적된 총계를 살펴볼 때,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발급받는 인원 수에 비해, 유아 특수교사 임용 인원은 약 12% 정도이다. 한편, 2012년부터 2020년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유아특수교사 수는 9년 평균 약 348명 정도인데, 그간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당이 각 10만원씩 인상되었음에도, 유아특수교사 임용자를 제외한 인력이 어린이집으로 유입된 수치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1-8〉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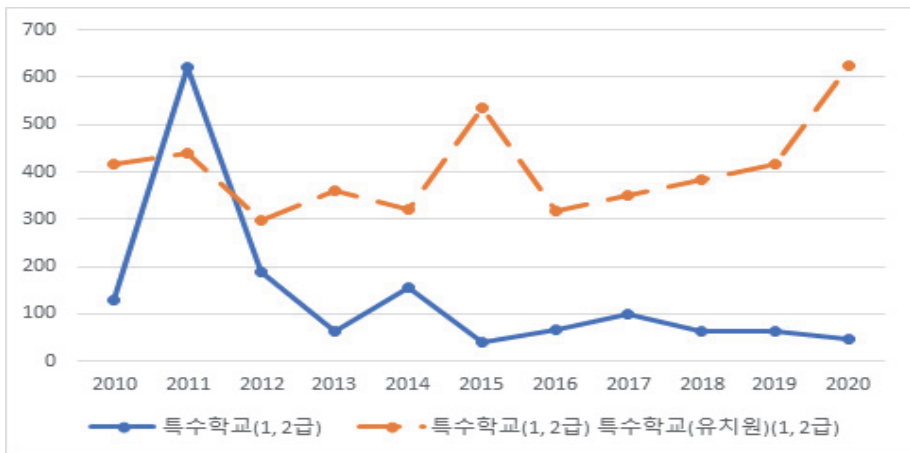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 자격종별	특수학교 (1, 2급)	특수학교 (유치원) (1, 2급)	합계	유아 특수교사 임용인원
2010	130	416	546	
2011	622	440	1,062	
2012	187	299	486	
2013	62	361	423	
2014	155	320	475	

연도 \ 자격종별	특수학교 (1, 2급)	특수학교 (유치원) (1, 2급)	합계	유아 특수교사 임용인원
2015	41	534	575	66
2016	66	319	385	104
2017	100	350	450	101
2018	62	382	444	159
2019	64	416	480	142
2020	45	623	668	
총계	1,534	4,460	5,994	572

주: 특수(초등, 중등, 의료, 재활복지) 등은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b).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내부자료.

[그림 II-1-5]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주: <표 II-1-9>를 도식화함.

<표 II-1-9> 연도별 어린이집 유아 특수교사 수('12~'20년)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아정교사1급	3	31	42	44	36	30	26	15	11
유아정교사2급	258	323	342	351	310	324	314	336	340
계	261	354	384	395	346	354	340	351	351

자료: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비교

〈표 II-1-10〉 어린이집의 일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의 일반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수당, 봉급, 보조인력지원, 근무시간 비교분석(202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일반교사	유아특수교사
수당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33만원,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 상이함)	직무수당 30만원, 자격수당 10만원(지자체별로 상이함)	정액급식비 14만원, 교직수당25만원, 교직수당(가산금4), 담임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유초등5년미만)7만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14만원, 교직수당25만원,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교사 7만원, 교직수당(가산금4), 담임13만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유초등5년 미만)7만원
봉급** (월 평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1호봉부터 시작 1,911,7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1호봉부터 시작 1,911,700원	9호봉부터 시작 2,061,700원	특수교사 1호봉 가산 10호봉부터 시작 2,117,500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교사 수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영아반 3개 증가 시 1명씩 추가 지원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장애아 현원 3명 증가 시 1명씩 추가 지원	-
	지원시간	1일 4시간 (월~금, 주 20시간)	1일 4시간 (월~금, 주 20시간)	-
근무시간	평일 8시간	평일 8시간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교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잡힘)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교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잡힘)

주: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봉급의 경우, 유치원의 첫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유치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더 높고, 어린이집은 호봉이 높아지지 않음. 유치원 일반교사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 1.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195, 208, 376, 453, 454.
 2.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11000000410> 에서 2020. 11. 6. 인출
 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p. 21, 42.
 4.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258130> 에서 2020. 11. 6. 인출
 5.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6.
 6. 교육부(2020a).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현황(2015~2020). 내부자료.
 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라. 소결

본 절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 관련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은 교부업무를 시작한 2015년 7월 1일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누적 19,157건으로 2만 건에 다다르고 있다. 발급 현황 수에 따라 자격수당 지급액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증을 가지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4,106명이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증 발급 건수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2020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6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유치원) 1, 2급 교사자격증 최근 발급 현황은 2018년 382명, 2019년 416명이며, 유아 특수교사 임용인원은 2018년 159명, 2019년 142명이지만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배치되어야 할 특수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재원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전문성 있는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교사를 양성하며,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법 제도 및 정책 분석

가. 법 제도 분석

장애영유아 교사의 자격·양성 관련 법 제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및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영유아 복지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특수교육 이외 장애영유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1)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가) 의무교육 관련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초중고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은 장애 유아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은 만3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게만 적용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9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자에게 통보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아의 경우 이러한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유치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이 이러한 장애 유아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가 받게 되는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의 균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에 대해서는 장애 유아 의무교육에 있어서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반대가 제기되었으나, 유아교육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주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의무교육 간주규정을 수용하되,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진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완되었다(정영조, 2007: 21).

동법 제19조제1항 본문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의무교육 간주규정인데, 만약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유아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해당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동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요건으로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배치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 규정도 동시에 삭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역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될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특수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조문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조문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 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 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어린이집 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에서 2020. 8. 26. 인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설치 등이 포함된다.

〈표 II-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다) 특수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기관 설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위탁 교육을 수행하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5조는 장애 유아에 대한 특수학교 및 유치원 통합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II-2-3〉 특수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조문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특수교육기관 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가)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서는 장애 유아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아 3명마다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표 II-2-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장특법)

조문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에서 2020. 8. 26. 인출

한편, 2019년 2월 20일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장애유아의 다수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장애유아 의무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학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표 II-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2019.2.20.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제10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3. 27.).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II-2-6〉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관련 규정

조문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춘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서 2020. 8. 26. 인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로 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도록 규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로 제시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기관 및 자격확인서 발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르는데,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경우이다. 이 법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만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의 자격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 10. 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 10. 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표 II-2-7〉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장복법)

조문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조문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자격검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①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대신함)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도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서 2020. 8. 26.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에서 2020. 8. 26. 인출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에서 2020. 8. 26. 인출

나) 자격확인 및 자격획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과 2012년 9월 4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을 구분하여 기본교과목

및 학점,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2. 8. 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을, 2012. 8. 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표 II-2-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12조 관련)

구분			내용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 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 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 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 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 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 (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아 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정신지체아 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 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구분		내용
	학습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 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 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 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 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 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2012년 8월 4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구분		내용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 라도 다음의 유사교과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언어치료학 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 교수 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아 교육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심리 및 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 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 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 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총정 및 평가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 교육	시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장애아동 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 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 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 실습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혹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실습

3.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에서 2020. 8. 26. 인출

3)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사 자격(검증) 제도¹⁾

가)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증 표시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이다.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시 1년의 교육 경력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 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 ①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2급란 제3호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의 경력을 포함한다.
- ③ 위 ②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 II-2-9〉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기본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1)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121.

나)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된다.
- ② 위 ①에 따른 인정 학점 범위에 졸업 전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포함되며,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 ③ 보건의료,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면허증과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면허 및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표 II-2-10〉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 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52.

〈표 II-2-1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특수교사 무시험 검정

특수학교 정교사 (2급)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 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99.

〈표 II-2-1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일반교사 무시험 검정 방법

전공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동)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원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 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101-102.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이 있다.
- 2)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3) 위 2)의 예외 사항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4)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적기준 적용 범위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으로 한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23조).
 -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③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④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거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⑥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대학원 포함) 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3) 위 2)에 따른 학점 인정 시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전공학점과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4)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특수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표 II-2-13〉 특수학교 정교사 1급, 2급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 (1급)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자격종별	자격기준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119.

라) 특수교사 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을 위한 이수 교과

〈표 II-2-14〉 특수교사 자격 무시험 검정 합격을 위한 이수 교과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특수학교(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자료: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 205.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표 II-2-1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구분	대상자
특별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이수해야 함(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223-224.

〈표 II-2-1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용

영역		내용
인성·소양 영역		•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건강·안전 영역		• 장애아급식 및 영양관리 • 장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장애아 보건위생관리
전문지식·기술	보육활동운영의 실체	• 장애아의 이해 I • 장애아의 이해 II •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 I •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 II • 운동발달 교수방법 •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 인지발달 교수방법 • 자조기술 발달 교수방법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 긍정적 행동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 지역사회 연계
	장애 및 다문화연계	
	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234.

〈표 II-2-17〉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기관 및 실시내용

교육기관	실시내용
위탁교육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차 이수제).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243.

4) 장애아 보육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은 100~200천원이며, 장애아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일 경우 월 478천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수납한도액이다. 장애아방과후 보육료는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아동은 232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20: 321).

〈표 II-2-18〉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대상	예외 항목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53.

〈표 II-2-19〉 장애아보육료 지원단가(2020)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장애아	비고
계	1,037,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지원(0세반 장애아: 3,000원)
부모보육료	478,000	
기관보육료	559,000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2.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20c: 382).

〈표 II-2-20〉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장애아 1인당 기관보육료 559천원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678천원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478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478천원)의 50%인 23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2-383,

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0c: 384).

반편성 기준은 장애아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다.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c: 38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배치는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교사 3인 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해야 하며,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방과 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역시 1:3이 원칙이고,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 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c: 385).

〈표 II-2-2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

구 분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 (월·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중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자로서 - 장애아반 담임교사지원비: 30만원 -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 10만원 ※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수당 수령자는 '20년말까지 적용 유예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30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현원 감소시 지원 기준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6.

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한다.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

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이다(보건복지부, 2020c: 388-389).

〈표 II-2-2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기준	•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7.8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9.

장애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장애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해야 한다.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c: 389).

반평성 기준은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하다. 단, 기본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20c: 390).

5) 기타 지원 사항

가)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중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자로서 장애아반 담임교사 지원비는 30만원이며, 장애아반이 아닌 경우 담임교사 지원비(통합반 일반교사 포함)는 10만원 지원한다. 또한, 장

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는 15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c: 391).

〈표 II-2-23〉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78천원
- 인건비 미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78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67.8만원(민간)	478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 지원 시설	- 1대 3기준(0세반)	80%	470천원
	- 1대 5기준(1세반)	80%	414천원
	- 1대 7기준(2세반)	80%	343천원
	- 1대 15기준(3세반)	30%	240천원
	- 1대 20기준(4세반이상)	30%	240천원
민간 보육 시설	- 1대 3기준(0세반)		470천원
	- 1대 5기준(1세반)		414천원
	- 1대 7기준(2세반)		343천원
	- 1대 15기준(3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20기준(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92.

나) 기관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 포함되지만, 장애아 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제외된다. 장애아 1인당 지원기준단가는 559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20c: 408).

다) 차량운영비 지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c: 414).

라) 장비비 지원

장애아 전문 또는 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 어린이집은 동일 연도에 일반 장비비와 장애아시설 장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단가는 1개소당 3,000천원(장애아 현원 20인 미만)~4,000천원이다(국비, 지방비 포함).

장비내용은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이동용 보조기구, 어린이집 내 이동·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학습참여 지원기구, 의사소통 지원기구,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지도자료, 안전용품 등이다(보건복지부, 2020c: 428-429).

6)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지자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 또는 통합 어린이집과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및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일 경우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하다. 장애아 전문 또는 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우선 채용한다.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한다(보건복지부, 2020c: 453-454).

가) 지원기준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보건복지부, 2020c: 453)

나) 지원 인원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 1명씩 추가 지원(보건복지부, 2020c; 453)

〈표 II-2-24〉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단위: 명, 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	2~4	5~7	8~10	11~13	14~16	

자료: 보건복지부(2020c). 2020년 보육사업안내. p. 453.

다)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한다(보건복지부, 2020c; 454).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한다(보건복지부, 2020c; 454).

3.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가. 국내 사례 및 동향

국내 우수사례 양성기관의 사례로 한국복지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와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양성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를 3년제(6학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다(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2).

2)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uw.ac.kr/nrtr/cm/cntnts/cntntsView.do?mi=1306&cntntsId=1048>. 2020. 11. 12. 인출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는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에 3년제로 개편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연성대학교 홈페이지³⁾).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3-1〉 국내 우수사례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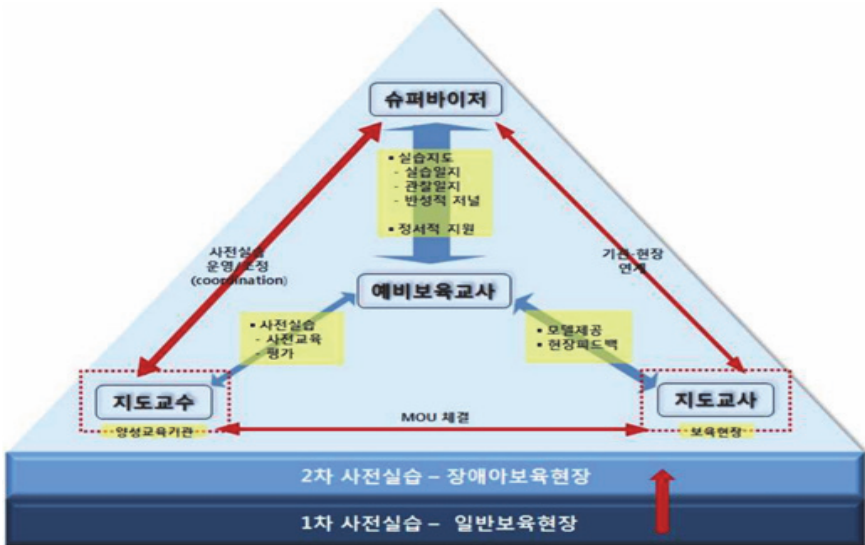
구분	전공교과목	졸업 학점
한국 복지대	교재교구개발과캡스톤디자인, 어린이집운영관리(창업), 감각장애아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 실제, 기약1, 기약2, 놀이지도,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보육실습, 보육학개론(장유), 사전실습, 아동건강교육, 아동과학지도, 아동 관찰및행동연구, 아동권리와복지, 아동동작, 아동문학교육,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음악, 언어지도,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발달, 유아특수교육개론, 자폐장애교육,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영유아교수법, 장애영유아통합교육, 장애진단및평가(장유),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특수아행동지도 (전공심화과정) 학급운영의 실제, 부모상담, 영유아상호작용의 실제, 유아문제 행동지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실제, 보육과정운영의 실제, 교육진단 및 IEP	110
연성대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발달, 특수교육학개론, 정신건강론, 특수교육 역사와 사상, 아동음악, 놀이지도,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언어지도, 아동동작, 자원봉사론,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정신지체아교육, 특수교구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장애유아진단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감각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지체장애아교육과재활, 정서장애아교육,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실습, 아동과학지도, 보육기관운영 및 창업, 가족복지론, 아동상담론, 특수아통합교육, 자폐장애교육, 개별화교육계획	106

- 자료: 1.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uw.ac.kr/nrtr/cn/connection/selectEduProcList.do?mi=1312>. 에서 2020. 11. 12. 인출
 2.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uw.ac.kr/nrtr/cn/connection/selectEduProcMajorList.do?mi=1314>. 에서 2020. 11. 12. 인출
 3. 연성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yeonsung.ac.kr/ecse/cms/FR_CON/index.do?MENU_ID=100 에서 2020. 11. 12. 인출
 4. 졸업학점: 한국복지대학교, 연성대학교 전화면담자료 (2020).

김승현, 원종례, 안의정(2016)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II-3-1]과 [그림 II-3-2]와 같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의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안의정, 원종례, 김승현(2017) 연구에서 사전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교수행동과 영유아의 학습 간의 관계에 대한 신념이 증가하였고,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3) 연성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yeonsung.ac.kr/ecse/cms/FR_CON/index.do?MENU_ID=40 에서 2020. 11. 12. 인출

[그림 II-3-1]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자료: 김승현·원종례·안의정(2016).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의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개발, p. 59.

[그림 II-3-2]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구성 내용

차시	1차 사전실습	2차 사전실습
목표	일반보육현장의 일과를 이해하고, 보육교사의 역할을 인식하여, 영유아를 관찰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의 현행발달수준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아들을 위한 교수방법을 관찰할 수 있다.
[준비단계] 사전실습 수행을 위한 사전교육 및 훈련	- 사전실습 오리엔테이션 - 어린이집 일과 이해하여 보육일지 작성하기 - 어린이집 환경과 유아의 행동 관찰방법 이해하기 -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 - 사전실습 기관과의 사전협의회	- 사전실습 오리엔테이션 - 발달영역 중심으로 관찰을 통해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 및 특성 파악하기 - 교육과정 수정을 반영한 보육일지 작성하기 -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 - 사전실습 기관과의 사전협의회
[실행단계] 사전실습 참여 (주 1회/총 8회기)	- 참여관찰 및 지원 - 보육일지 작성하기 - 영유아 행동에 대한 일화기록하기 - 실습경험에 대한 반성적 저널쓰기 - 슈퍼바이저 실습현장 방문(2회): 예비보육교사의 적응과 태도 관찰	- 장애영유아 발달 및 특성 관찰하기 - 장애영유아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수정된 보육일지 작성하기 - 장애영유아의 발달영역별 현행수준에 대한 관찰하기 - 장애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실습경험에 대한 반성적 저널 쓰기 - 슈퍼바이저 실습현장 방문(2회): 관찰 장애영유아의 파악, 예비보육교사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수행 정도 관찰
[평가단계] 사전실습 평가	사전실습 평가회를 통한 개인적 성장에 대한 자기평가 및 구성원들 간의 정보 공유	

자료: 김승현·원종례·안의정(2016).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의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개발, p. 60.

나. 장애영유아 관련 미국과 일본 사례 및 동향

1) 미국

미국의 특수아동협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EC)⁴⁾의 유아교육분과는 유아특수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로 사정(assessment), 가족 참여(family participation),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FSP)/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서비스 제공모델(service delivery model), 일반교육과정과 중재 전략(general curriculum and intervention strategy), 발달 영역별 기술(skills across developmental areas)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환, 재능아를 위한 프로그램, 전문적 능력의 신장, 프로그램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CEC, 1995).

미국의 특수교사 양성과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교사 경력 2년 후 대학원 특수교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특수교육학도가 4년제 학부과정으로 되어있는 경우, 4년제 학부과정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교사자격 취득 경로가 다르고 주 내에서도 다양한 경로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은 일반교사(general education teacher)보다 엄격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하고 교육경력이 있어야 대학원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표 주의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캘리포니아⁵⁾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방법이 있다.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유아특수교사(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자격을 상위학교, 대학원 과정을 입학하여 취

4)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1995). What every special educator must kn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eparation and certifica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5) <https://www.ctc.ca.gov/credentials/req-teaching>에서 인출 및 요약

득하는 것이다.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자격 주어진다. 특수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실습은 학생에 따라 두학기나 세학기에 걸쳐 실시하고 대학교수가 한 학기에 7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지도 및 평가를 하게 된다. 다음은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건들이다.

- (1)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 (2) 기본적인 교수기술을 습득한다.
- (3)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통과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4) 읽기능력 시험(Reading Instruction Competence Assessment)에 통과한다. - 유아특수교사는 제외
- (5) 교육 특별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다.

나) 텍사스⁶⁾

예비교사자격증(Provisional Certificate)을 가진 사람만 공립학교와 계약에 의해 채용될 수 있다. 교사자격증은 대학양성과정, 지역 교육서비스센터의 양성과정, 학교구의 양성과정 등을 통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되며 평생동안 유효하다.

전문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e)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학교구 교육감, 학교장, 교감, 장학사 등과 기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상담교사(Counselor), Visiting Teacher, Reading specialist, Learning Resources Specialist, Educational Diagnostician 등의 교육전문가와 특수교육장학사, 특수교육 방문교사, 특수교육상담가 등 특수교육 전문가에게 전문 자격증을 요구한다. 전문자격증은 예비교원자격증을 가지고 2-3년 이상의 학생 지도 경력을 가진 후 소정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된다. 기한부 자격증(One-year Certificate)은 타 주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나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해야 교사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다. 비상강사허가증(Emergent permit)은 교사가 부

6) 국립특수교육원(2002). 미국의 특수교육: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족할 때 지역구에서 1년간 주는 강사 허가증이다.

텍사스는 현재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에 기초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증 발급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책임제도를 통하여 학생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다.

다) 뉴욕⁷⁾

뉴욕 주는 다양한 유형의 교사자격증을 발급한다. 타 주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위한 1년 간 임시 교사 자격이나 전문가 수준의 교사 자격, 다중분야의 교사 자격 등 다양한 자격이 있는데 다음은 유아특수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 뉴욕 주에 교사자격발급 기관으로 등록되고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다.
- 뉴욕 주의 교사 자격시험(Educating All Students Test ;EAS)을 치른다. 이 시험은 인문, 과학, 교수이론과 실제, 자격증 관련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내용 전문성 시험(Content Specialty Test ;CST)을 치른다.

한편, 김효선(1995)은 미국 특수교사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주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선택할 수 없다(2학기의 실습으로 교직에서 쉬어야 함). 둘째, 법과대학이나 의과 대학만큼 오래 걸리는 반면 특수교사의 처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어 동기유발 시키기 어렵다. 셋째, 교사 부족으로 각 주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 해결책으로 주정부 교육부에서 학부 졸업자 중 교사가 되기에

7) 뉴욕고등교육국홈페이지<http://www.highered.nysed.gov/tcert/certificate/certprocess-search.html>에서 인출한 내용 요약

가장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학능력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임시 특수 교사 자격증을 주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35%가 임시자격증을 갖고 있는 무자격 교사로 임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1년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 후 교육청에 제출해야 다음 해 임시자격증 연장될 수 있다. 넷째, 현직교사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보다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자기학급에서 실습을 3학기 하는 동안 교수가 7회 방문하는 것 외에는 경력교사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음으로 실습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여섯째, 대학 간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차이로 이수 학점 및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주기도 하나 이 자격증은 해당 교육청 관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제약이 있다.

2) 일본: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현장실습 사례

일본의 경우 교원면허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특별지원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자격증 이외에 특별지원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초중고 중 하나의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대학에서 26학점 이상(1종면허의 경우)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유치원, 초중고에서의 교육실습과는 다르게 특별지원학교에서 2주간의 교육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초중고 중 하나의 교원자격증(보통 자격증)을 소유하고, 이 중 하나의 학교의 교원(강사 포함)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 등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특별지원학교 2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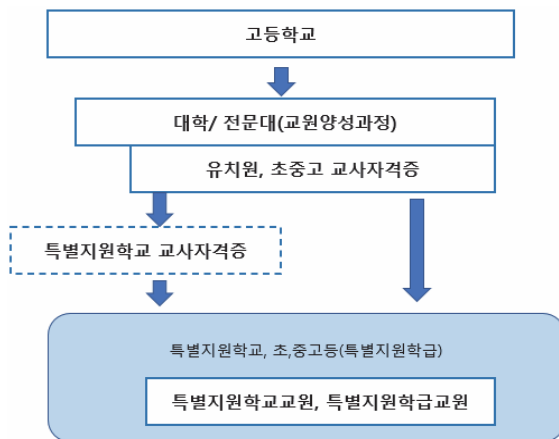
가) 일본의 특수교사자격증

일본의 특수학교는 특별지원학교⁸⁾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자격증은 특별지원학교 교유면허장(이하, 교사자격증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 교원면허법에 따

8) 맹인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로 분류되어 있던 교원자격증은 2007년 4월에 실시된 학교교육법등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별지원학교의 교사면허가 일원화되었다.

르면 일본에서 특별지원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자격증 이외에 특별지원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⁹⁾ 그러나 특별지원학교에서도 당분간은 특별지원학교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교원이 될 수 있다는 부칙 규정¹⁰⁾이 있어, 특별지원학교 교사는 자격증 없이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림 II-3-3] 일본 특수교사자격증 과정



자료: 독립행정법인교직원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 에서 2020. 10. 7. 인출

나) 특별지원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1)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에 따른 방법(교육직원면허법 제5 별표 제1)

유초중고 중 하나의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대학에서 26학점 이상(1종면허의 경우)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유치원, 초·중고에서의 교육 실습과는 다르게 특별지원학교에서 2주간의 교육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교원실무경험과 단위이수에 따른 방법(교육직원면허법 제6조 별표제7)

유치원, 초·중고 중 하나의 교원자격증(보통자격증)을 소유하고, 이 중 하나의

9) 문부과학성 교원면허법3조3항 (教育職員免許法第3条第3項) .

10) 교육직원면허법 부칙 제15 조문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는 당분간 특별지원학교의 상당하는 각부의 주간교사, 지도교사, 교사 또는 강사가 될 수 있다.

학교의 교원(강사 포함)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 등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특별지원학교 2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직교사이면 면허법 인정 강습으로 학점 이수도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는 교육실습은 필요하지 않다.

특별지원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특수교사의 실무가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의 방법으로 특별지원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을 걸고 있다.

다) 특별지원학교 교원자격인정시험제도의 취지¹¹⁾

폭넓게 일반사회에 인재를 찾기 위해, 교원 확보를 목적으로 대학 등에서의 통상 교원양성코스를 밟았는지에 관계없이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교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원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시험실시 업무를 독립행정법인 교직원지원기구가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특별지원학교 교원자격시험은 청각장애교육 및 지체부자유교육의 2종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하면 합격한 종목에 따라 특별지원학교 자립활동교사의 1종자격증(청각장애교육 또는 지체부자유교육)을 수여한다. 이들의 자격증을 소유하는 자는 특별지원학교 및 특별지원학급에서 각각 청각장애자 또는 지체부자유자의 자립활동만을 담당할 수 있다.

〈표 II-3-2〉 시험 실시과목과 취득 가능한 보통면허증의 종류 등

실시종목	취득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자립활동(청각장애교육)	특별지원학교 자립활동교사 1종자격증(청각장애교육)
자립활동(지체부자유교육)	특별지원학교 자립활동교사 1종자격증(지체부자유교육)

자료: 독립행정법인교직원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 에서 2020. 10. 7. 인출

11) 독립행정법인교직원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 에서 2020. 10. 7. 인출

라) 시험자격¹²⁾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 (1) 대학(단기대학을 제외함)을 졸업한 자
-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 외 대학(전문대학 및 문부과학대신의 지정하는 교원양성기관을 포함. 이하 동일)에 입학하는 자격을 소유한 자로, 1998년 4월 1일 까지 태어난 자
- (3)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 규칙(2005년 문부과학성령 제1호)부칙 제4 조표의 상란 각호에 게재된 자

마) 특별지원학교 교원자격증 이수학점¹³⁾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과목인 [특별지원교육의 기초이론],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의 심리, 생리 및 병리],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의 교육과정 및 지도법],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에 대해, 필요 학점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원학교 교원자격증을 위한 필요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지원교육의 기초이론에 관한 과목 (2학점)
 - 특별지원교육의 기본적인 생각, 특별지원학교의 교육(자립활동을 포함), 초, 중학교 등에 있어서의 특별지원교육
- (2)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의 심리, 생리 및 병리에 관한 과목(4학점)
 - 각장애아의 심리, 생리 및 병리에 관한 사항
 - 여러 검사의 기초
- (3)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의 교육과정 및 지도법(각장애종별에 관한 자립활동을 포함)에 관한 과목(9학점)
 - 시각장애아의 지도(점자의 지도를 포함)

12) 독립행정법인교직원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 에서 2020. 10. 7. 인출

13) 玉村公二彦外5人, 「特別支援学校教員免許と障害児教育養成カリキュラムー特別支援学校1種免許を中心としてー」, pp.272-273. (<https://www.nara-edu.ac.jp/CERT/bulletin2007/b2007-H18.pdf>)

- 청각장애아의 지도(청각이나 수화 등을 활용하는 언어지도를 포함)
- 지적장애아의 지도(교과별 지도, 영역/교과를 맞춘 지도 등을 포함)
- 지체부자유아의 지도
- 병약아의 지도
- 언어장애아의 지도(구음 지도를 포함)
- 중복장애아의 지도
- LD/ADHD/고기능 자폐증 등의 유아, 아동 또는 학생의 지도

(4)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3학점)

- 사전 및 사후의 지도(1학점)
- 특별지원학교에서의 실습(2학점)

(5) 선택필수과목(8학점)

- 특정의 장애종별(특별지원학교의 대상이 되는 5종류의 장애종별에서 1장애종별을 선택, 또는 선택한 1장애종별에 대해 그 외의 장애종별(언어장애, 정서장애, LD/ADHD/고기능 자폐증 등을 포함)에 대해서도 선택에 대해서, 아동 학생 등의 심리, 생리 및 병리에 관한 과목 및 교육과정각론 및 지도법에 관한 과목

다. 장애영유아 지원제도 관련 해외 사례

1) 장애의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을 위한 협력체계¹⁴⁾

해외 사례에서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해 검진 및 진단, 상담과 중재 기관, 의료복지·교육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 있다.

- ▶ 독일: 전문의의 장애 진단 이후 조기개입 및 중재를 위해 지역 소아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적 지원이 제공되고, 조기개입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짐.
- ▶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IDEA)에 의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14) 국가인권위원회(201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0집 [2017].

- ▶ 일본: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 상담소나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징후와 진단 및 검진에 대한 정보, 영유아 시기 필요한 치료나 교육, 가족지원 등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 조정해주는 기관이 없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도 미비한 상태이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검사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영유아 중재 기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는 각 기관에 한정된 교육이나 재활서비스, 복지시책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지원을 할 뿐 장애 영유아의 발달이나 장애 정도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14조는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가 지원기관이나 중재 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2) 미국 특수교육법(IDEA)상 장애영유아 관련 규정¹⁵⁾

가) 미국 특수교육법(IDEA)의 Part C

미국 특수교육법(IDEA)에는 한국 특수교육법과 달리 장애 영유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이 Part C로 분리되어 구체화되어 있다. Part C는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3-5세 장애유아 및 6-21세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는 Part B에 규정되어 있다. Part C에

15) 이황원(2013).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상 장애 영유아 교육서비스에 대한 고찰 참고

규정된 조기개입서비스(Early Intervention Service, EIS)는 주정부에서 장애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달지원 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를 의미한다.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EIS는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팀(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Team)에 의해 작성된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서(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에 따라 제공된다. EIS는 IDEA에서 정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 전문가들은 특수교사, 언어병리학자, 청각학자,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가족상담사, 시각전문가, 교정전문가,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 등을 포함한다.

EIS의 세부내용은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청각서비스, 가족훈련·가족상담·가정방문 서비스, 건강 돌봄 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영양서비스,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신체치료, 심리치료, 언어수행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음성언어병리서비스, 시각지원서비스, 교통 비용지원 서비스, 특수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특수교육법과의 비교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에 관해 별도의 독립된 장이 없고 일부 규정으로만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IDEA에서는 만 3세 미만의 장애 아동도 모두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 이상이 되어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어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는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개별화교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IDEA에서 만 3세 미만의 개별화교육은 장애아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만3세 이상 유치원 재학생의 교육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특수교육 서비스는 정부가 아니라 부모에게로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미국 특수교육법(IDEA)에 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¹⁶⁾

미국 IDEA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주, 시·지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전국 수준의 지원조직

(1) 지역자원센터(Regional Resource Center)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장애아동, 성인기 장애인, 가족 서비스의 기대 효과 향상을 위해 주정부의 조기개입과 특수교육 시스템을 지원한다. 각 주의 특수교육 담당관과 0-2세 장애영아와 장애위험영아를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 주무 기관을 주로 지원한다.

(2) 연방특수교육자원센터(Federal Resource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 지원 내용의 질과 지속성을 향상하도록 지역자원센터에 자문,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된다.

(3) 행동지원센터

(가) 전국긍정적행동중재지원센터(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 on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학교 현장에 있는 문제행동 아동의 발견, 문제행동 아동에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확인, 교사들에게 문제행동 아동의 개입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6) 이미선·조광순(2006). 미국의 특수교육 지원조직 관련 법규와 운영 실태 분석.

(나) 행동장애영유아지원센터(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Young children with Challenging Behavior)

조기개입 및 학령전 장애영유아 중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영유아 뿐 아니라 비장애 영유아 중 정서·행동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4) 전국영유아기술지원센터(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System)

IDEA에서 지원하고 있는 0-5세 장애영유아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주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질적 수준이 높은 가족중심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단계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정부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5) 지역부모자원센터(Regional Parent Resource Center)

장애아동의 가족은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IDEA의 Part D에 규정된 주요한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각 주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모훈련정보센터 및 지역사회 부모자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학술대회, 회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개별화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자료집 출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제공 서비스, 현장 방문을 이용한 지원을 제공한다.

나) 주 수준/시·지역수준의 지원조직

주 수준의 지원조직으로는 부모훈련·정보센터, 특수교육자원센터가 있다. 시·지역수준의 지원조직으로는 지역사회 부모자원센터, 시·지역교육청 자체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가 있다.

다) 특징

미국에서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센터 뿐 아니라 특수교육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주, 시·지역 차원의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및 주 수준의 지원센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주정부 및 시·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서비스 기준을 개발하며, 문제해결 모형을 개발하여 주정부와 시·지역교육청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편(안) 설계

- 01 조사개요
- 02 조사결과
- 03 개선방안 조사결과
- 04 3단계 설계 모형 및 특별직무교육과정(안)

Ⅲ.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편(안) 설계

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핵심참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교사 및 교수 그룹,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단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의견

- 수당을 목적으로 확인증 받는 교사들이 급증
- 대부분 사이버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성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장애영유아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상황이 있음. 사각지대 존재
- 수도권 및 특정 지역 외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거의 없음. 이로 인해 교사 배치가 지역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유아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 퇴보라고 생각되지 않음.
- 교사의 질은 어린이집마다 다르며, 모든 기관의 교사가 질이 낮은 것은 아님.

2) 교사 그룹 의견

- 수당을 목적으로 자격확인서를 받는 현 상황
 - 의견1) 자격확인서를 쉽게 딸 수 있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교사의 질 문제가 있음.
 - 의견2)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면 나쁘지 않음. 교사 인력풀이 많지 않아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 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음.
 - 반대(의견) 확인증이 많이 배출되더라도 현장에 오는 교사 수는 한정되어 있을 것임.
 - 기타) 자격 수당은 지자체마다 다 다름.
- 기타 의견
 - 교사 배치에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있음.
 - 누리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장애반을 맡으면 누리 수당을 받지 못함.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수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보육진흥원 의견

- 수당 지급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자격확인서의 남발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자질의 문제임.
- 지역별 편차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자질 부족의 문제가 더 중요함.
- 실습이 중요하나 실습 기관의 수가 부족함.
- 현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한 루트가 과반수 이상으로 예측함.

4) 교수 그룹 의견

- 자격확인서 조건 강화
 - 실습과목 필수로 지정
- 유특교사 200명 졸업, 내년 240명 뽑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428명 정도 부족함.
 -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 마련: 센터 중심으로 가정방문 순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출 공식 루트가 필요함.

- 유특교사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한채 현장 경험이 있으므로, 유특교사보다 더 나은 조건일 수도 있음.

3. 개선방안 조사결과

1)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포함) 의견

- 자격확인서 조건 강화
 - 실습과목 필수로 지정
 - 보육교사 1급일 경우 혹은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 지역 체계 시스템 강화
 -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 마련: 센터 중심으로 가정방문 순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 및 봉급표 개설
 - 수당 지급은 미봉책으로 보임. 급수나 경력에 따른 봉급이 있어야 함.
 - 추후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특수교사와 균등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
 - 예) 2급 → 1급: 실습 추가
 - 한편으로, 급수가 생기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일반 보육교사(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겠음.
- 유아특수교사 유인책
 - ▷ 유아특수교사 코디네이터: 총괄책임 및 교사교육
 - 담임이 아닌 반 순회 역할
 - 조건: 석사 이상 혹은 경력 몇 년 이상
 - 직책 수당 지급
 - ▷ 어린이집 경력 인정
- 보수교육 강화(확인증 유지)
 - 확인증 남발로 인해 필요함.
 - 1년 마다 보수교육; 교육 미수료시 수당 지급받지 못하도록 혹은 자격 유지 불가
 - (장기 미종사자의 기준 정하여) 장기 미종사자 교육 필요
 - 실습 추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관 환경에 따라 교육부에서 장애유아를 배치함.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 폐지 필요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장통) 조사에 의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0인 중 2~3인만 장애아반을 맡고 있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무조건 수당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자격수당이 아닌 직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함.

- 장애영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자격증으로 만들면 좋겠음.
- 약 3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교사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함.
- 인턴십(3~6개월) 혹은 투담임제로, 대학 졸업 후 담임 말지 않고 현장을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2) 교사 그룹 의견

- 확인증 조건 강화
 - 실습과목 필수로 지정
 - 관련 의견: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함.
 - ‘보육교사 1급일 경우’로 조건 강화
 -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6개월~1년 근무 중에도 확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실제 장애아동반을 맡았을 때, 보육진흥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형식도 좋겠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 및 봉급표 개설
 - 확인증을 2급으로 하고, 1급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면 좋겠음.
(예: 현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 승급)
 - 수당체계가 아닌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봉급체계를 각각 개설하면 좋겠음.
 -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현재 근속수당도 지자체별로 다름.
 - 1급일 생길 경우 수당은 더블로 6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직무교육 강화
 - 온라인 교육뿐이며 질이 낮음. 개선이 필요함.
 - k-MOOC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같이, 콘텐츠 질을 높여야 함.
 - 장애 관련한 전문적인 과목(언어치료 등)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남양주, 화성) 시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이 올해(2020년도) 시작됨.
 - 대구교육청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도 있음(주중 교육).
- 유아특수교사 유인책
 - 유아특수교사 코디네이터: 대부분 좋은 의견이라 말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어린이집 경력 인정(1급 승급 교육을 받지 못함): 교육부에 의뢰해야 할 문제. 경력이 인정된다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함.
 -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장은 할 수 있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은 못 함. 가능하게 해야 함.
 - 유아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업무가 차이가 없음.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오후 연장반 교사 배치 문제가 있었음). 일반 보육교사와 원장이 장애영유아반을 맡는 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함.

-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 연차, 급여, 승급, 처우 등 개선 필요
- 수당 지급 개선
 - 수당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 면허증에서 자격증으로 가는 루트를 체계화하면 좋겠음.
- * 지역체계 시스템 강화(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 마련)에 대한 의견
 - 의견1) 별도의 민간 위탁체는 별로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음.
 - 의견2) 장애영유아들은 평생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지만, 센터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겠음.
 - 의견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 :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추가에 대한 의견
 - 의견1) 유아특수교사가 더 안 올 것 같음.
 - 의견2) 모든 어린이집이 통합 어린이집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괜찮다고 생각함. 장애영유아가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의견3) 이 시행령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음.
-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관련
 - 현재 의무교육 혜택(치료비, 학급비 지원 등)을 받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과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 힘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력, 교육 등을 통하여 유아특수교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면 좋겠음.

3) 한국보육진흥원 의견

- 교과목 재구성 및 강화가 필요함
- 종전 교과목 폐지(유예기간 혹은 추가 이수과목 필요)
- 장애유형별, 수준별, 연령별 차이를 기준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 교과 배치 필요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필요: 중증, 경증, 경계선 영유아의 정도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 및 봉급표 개설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은 급수개설을 하면 일반보육교사처럼 확인서(2급), 발급 후 3년 이상 일할 경우, 1급을 받는 체계도 좋다고 생각함. 문제점은 개설은 좋지만, 일반보육교사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처우, 근무조건, 사회적 인식 등에서 유치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유인책으로 유아특수교사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순회교사처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코칭 형태로 도움을 주면 좋겠음.
- 자격양성체계에서 실습이 중요함에도 실습기관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음.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일 경우, 교육을 더 이수한 전문적인 교사가 맡아도 좋겠음.
- 수당지급액이 상승하면 현직교사들도 재교육을 받을 것 같음.
예시) 한국보육진흥원의 직무교육예시(온라인): 1차 온라인 기본교육, 2차 온라인 심화 교육, 3차 그룹 컨설팅(40명 내외)
- 지역체계시스템 마련에서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자리매김하여 진단 및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역할을 하면 좋겠음.
- 0-2세를 위한 교사 배치가 있어야 함.
- 장특법 유아 의무교육 간조조항 관련, 간주가 아닌 영유아교육법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조항이 포함되면 좋겠음.
- 자격요건 강화방안으로 가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겠음.
- 현재 치료사, 특수교사들도 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교수 그룹 의견

- 교과목 재구성 및 강화가 필요함
- 종전 교과목 규정 폐지(유예기간 혹은 추가 이수과목 필요)
- 실습과 대면교육을 강화(대면교육 전체 60% 이상, 실습 필수과목)
- 수과목은 장애아실습, 진단과 평가, 교수방법, 통합학급 운영 등 나머지는 영역별로 한 두과목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진이 개발한 3단계 모형의 동의함. 다만 세부 내용을 추후 정책과제화 할 필요가 있음.
-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복무, 방학, 노동조건(근무시간 등), 정년, 승급, 인식과 위상의 문제 때문임.
- 장특법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조항이 삭제되면, 장애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며, 3단계 안도 무위로 돌아감.
-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는 방법도 있음.
- 특별직무교육은 40학점, 80학점을 할 것인지는 2차 델파이 조사지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음.
- 관련학과 석사졸업자의 경우, 1년 또는 2년 장애반 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직무연수 플랫폼을 만들어, 교사가 기초와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특교사를 직접채용하고 배치하는 방법도 적합함.

4. 3단계 설계 모형 및 특별직무교육과정(안)

본 절에서는 이상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3단계 모형(안)을 설계하고 도출하였다.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과목을 늘리거나, 실습과 대면 교육을 강화하거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2단계는 급수제 도입 안으로 1단계가 안착되면 2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하면 2급, 3년 경력과 특별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하도록 하여 승급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와는 달리, 유아특수교사 제도와 같이 (가칭)특수보육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상의 단계(안)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정책 변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 규정 삭제 가능성, 학과제 개편) 등을 고려하여 취사 선택 가능한 안이다.

이상의 3단계 설계 모형(안)의 도식과 설계 모형 실행 시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4-1] 3단계 설계 모형(안)

〈정책목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 제고				
〈정책변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 삭제 가능성, 학과제 개편				
단계 (안)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 영역	현행 제도의 개선(안)	급수제도 개설(안)	특수보육교사제(가칭) 신설(안)	
주안점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교과목(학점)을 추가하고, 실습과 대면 교육 강화 •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 1단계 현장 정착 시, 급수제로 변환 가능	• 종전 제도 폐지, • 학과제 실시와 병행 • 유아특수교사제도와 유사 • 특수보육교사가 영유아 모두 담당	
정책 대상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 특수보육교사(가칭)(0-6)	

단계 (안)	1단계	2단계	3단계
	현행 제도의 개선(안)	급수제도 개설(안)	특수보육교사제(가칭) 신설(안)
자격 양성	• 현행 8과목(24학점) 과목 추가가능성 • 필수과목지정(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3-4과목) • 교과목 영역별 선택제 • 대면교육 60%	•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3년 경력과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승급과정으로 변환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 1급 개설 가능	• 학과제/3년제+심화과정 ※ 유아특수교사 4년제 135점(전공 86학점+교직)
보수 교육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2급 대상 직무 및 승급교육과정 개설	• 유아특수교사제도와 유사
수당	• 직무수당 · 특수교사 50-60만원 지급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과정 이수 시 50-60만원 수당지급	• 직무수당 · 2급 : 30만원 · 1급 : 50-60만원 지급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과정 이수 시 50-60만원 수당 지급	• 수당제에서 호봉제로의 개편 • 개편 또는 1,2단계 유지
법개정 사항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를 구성
예상 되는 문제점	• 현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음.	• 일반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다른 방법으로 보정 필요)	• 유아특수교사와의 질적 우위 논쟁은 여전히. • 일반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 지원	• 통합학급의 일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고민 필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 공식 루트 확보 • 실습기관 확보 필요		

[그림 II-4-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과정 예시(안)

모듈	강의명	시간
1	발달지체 영유아의 이해	총 2시간
2	발달영역별 교수방법의 실제	총 10시간
	1.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2.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Ⅲ.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요구 분석 및 개편(안) 설계

모듈	강의명	시간
	3. 인지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4.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5. 운동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3	교육진단 및 개별화 교육계획 실행의 실제	총 10시간
	1. 교육진단의 실제	4시간
	2. 개별화 교육계획 및 실행의 실제	6시간
4	감각 운동 안에서의 심리운동 실제	총 3시간
5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	총 4시간
6	교사 및 가족의 협력	총 5시간
	1. 교사 간 협력의 실제	2시간
	2. 가족지원 및 협력의 실제	3시간
7	보육사례	총 6시간
	1. 보육사례(1)	3시간
	2. 보육사례(II)	3시간
14강 총 40시간		

I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01 조사개요

02 조사결과

I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본 장의 목적은 이상에서 제시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체계 3단계 설계 모형(안)과 특별직무교육과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 응답자 특성

연구수행을 위해 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였으며,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전문가 패널 40명은 장애영유아 관련 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40명의 응답자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40명의 경우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가 12명(30.0%),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이 20명(50.0%),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가 5명(13.0%), 연구원 및 변호사 3명(7.0%)이었다. 학위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20명(50.0%), 석사학위 소지자 13명(35.0%), 학사 학위 소지자는 5명(13.0%), 기타가 1명(2%)이었다. 전공은 유아특수 및 특수교육이 19명(48.0%), 사회복지 8명(20.0%), 유아교육 4명(10.0%), 아동학과 상담심리가 각각 3명(8%), 기타 전공이 1명(1.0%)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39명(97.0%)으로 대다수였고, 남자는 1명(3.0%)이었다. 연령의 경우 평균은 50.4세였고, 60대는 5명(12.0%), 50대는 17명(43%), 40대는 14명(38.0%), 30대는 3명(7.0%)이었다.

〈표 IV-1-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명)	비율(%)
소속기관	대학	12	30.0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20	50.0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5	13.0
	연구원 및 변호사	3	7.0
학위	박사	20	50.0
	석사	13	35.0
	학사	5	13.0
	기타	1	2.0
전공	유아특수 및 특수교육	19	48.0
	사회복지	8	20.0
	유아교육	4	10.0
	아동학	3	8.0
	상담심리	3	8.0
	기타	1	1.0
성별	여자	39	97.0
	남자	1	3.0
연령 (평균: 50.4)	60대	5	12.0
	50대	17	43.0
	40대	14	38.0
	30대	3	7.0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책대안이나 중요 요소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 문항은 개방형으로 개발되었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이론적 검토 결과를 결합하여 2차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e-mail 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 조사로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동의 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질문내용
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의 문제점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의 문제점을 기술해주세요.
		2.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어렵거나, 이직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주세요.
I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의 개선방안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의 개선방안을 기술해주세요
III	추가 의견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IV	개인특성배경	-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표 IV-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질문 내용
I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 개편을 위한 설계(안)	1. 설계모형의 타당도 2. 수정 보완 의견(개방형)
II	설계모형 1단계 현행제도 개선안	1. 설계모형의 타당도 2. 수정 보완 의견(개방형)
III	설계모형 2단계 급수제 신설안	1. 설계모형의 타당도 2. 수정 보완 의견(개방형)
IV	설계모형 3단계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1. 설계모형의 타당도 2. 수정 보완 의견(개방형)

3)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진은 회의를 거쳐 질적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방형으로 서술된 내용들에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다룰 유의미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2차 조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도출하였다. 평균이 높으면 델파이 조사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σ)를 산술평균(μ)로 나눈 것이다. CV값이 0.5보다 낮을 경우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CVR은

델파이 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이다. CVR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본 연구에서는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 40명일 때, .29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각각의 평균과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문항으로서의 중요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문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LFF(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설계 모형(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안) 전체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판단을 조사한 결과(〈표 IV-2-1〉 참조), 긍정적 의견인 ‘매우 타당하다’와 ‘타당한 편이다’에 응답한 전문가는 34명으로 전체 40명 중 85%였다. 따라서 델파이 조사에서 모형(안) 전반에 대한 타당성이 대다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지지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보통이다’와 ‘타당하지 않다’의 의견도 2명이 존재하여 소수 의견이지만 모형(안)의 수정이나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도 조사되었다.

〈표 IV-2-1〉 모형(안)에서 설정한 단계 구성과 각 단계별 영역 구성에 대한 전반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척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전혀 타당하지 않다	0	0.0	3.39	0.70
타당하지 않다	2	5.0		
보통이다	4	10.0		
타당한 편이다	27	67.5		
매우 타당하다	7	17.5		
합계	40	100.0		

이상의 모형의 안에 대해서 85% 정도는 동의는 하였으나, 소수의 반대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개선하

거나(1단계), 급수제 마련(2단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향상되기 어렵다고 보고, 3단계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3단계안에 집중하여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가칭)특수보육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격 취득을 위해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2단계는 3단계 전까지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자격과 양성체계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화된 교육 기간과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래서 제시하신 1단계, 2단계 안도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와 같이 유보통합이 되어 있지않는 여건 내에서 단순히 몇 과목을 더 늘리고, 승급 과정을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봄. 차라리 3단계 인인 특수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유아특수교사 양성제도와 유사한 교육 기간과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승급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우선 보육 현장에서는 전문성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1단계 안과 2단계 안을 적용하면서 3단계 안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 (전문가 1)

현재 장애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이 단계별 과정으로 인해 향상되기 어려움. 1단계는 온라인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대면 교육 강화만으로는 교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유사 과목 인정제는 문제가 있음. 2단계 급수제도 개설안도 궁극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3단계 특수보육교사제도 신설 만만이 교사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할 것임. 현재 장애아 담임을 맡고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특수보육교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도 고려해야 함. (전문가 2)

나.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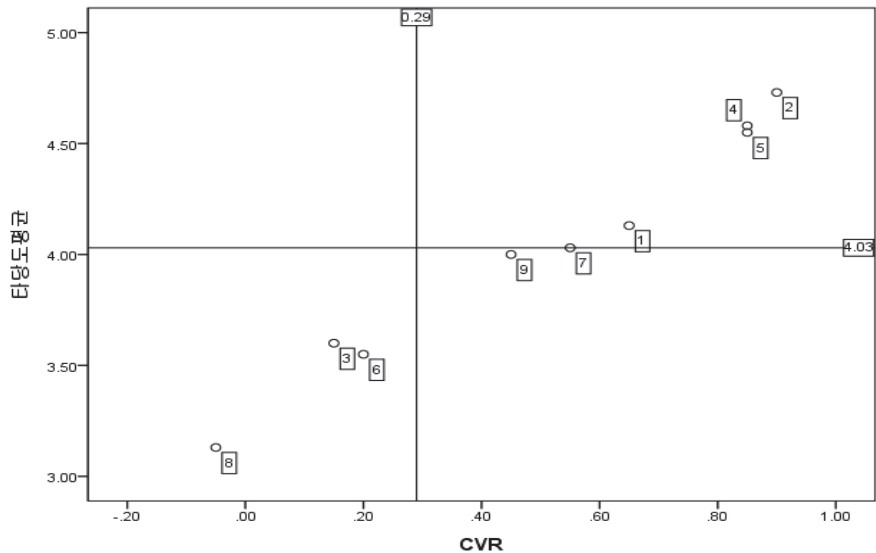
1) 설계모형(안) 관련

Lawshe(1975)의 기준 40명 때 .29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해당된 9개 항목 중 3번, 6번, 8번은 전문가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타당도 조사결과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1번, 2번, 4번, 5번, 7번이 해당되었다. 반면에 3사분면에 9번, 4사분면에 3번, 6번, 8번이 해당되었다.

〈표 IV-2-2〉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의견 조사 결과

정책요소군		2차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1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이후 ‘교과목’으로 통일)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 필요	4.13	1.02	0.65	I
2	현행 교과목에 이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 (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4.73	0.64	0.90	I
3	교과목 영역별 선택제를 추진하여,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을 높임.	3.60	1.13	0.15	IV
4	교과목의 60% 정도를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여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	4.58	0.78	0.85	I
5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을 개설	4.55	0.78	0.85	I
6	장애반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 이수 시 50-60만원 가량의 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일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장애반을 담당하면 30만 직무수당을 지급	3.55	1.04	0.20	IV
7	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촉진을 위해 직무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지급액을 상향	4.03	1.07	0.55	I
8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	3.13	1.59	-0.05	IV
9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	4.00	1.11	0.45	III
전체 평균		4.03	1.02	0.51	

〔그림 IV-2-1〕 현행 제도의 개선(안) LFF 분석결과



따라서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1번(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이후 ‘교과목’으로 통일)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 필요), 2번(현행 교과목에 이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 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4번(교과목의 60% 정도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 5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을 개설), 7번(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촉진을 위해 직무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지급액을 상향)의 5개 방안이었다.

최우선순위 5개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살펴보면, 1번(현행 교과목에 이수과목 추가 필요)의 경우, 교과목 외에도 과목의 심화 부분을 추가하거나, 이수과목 확대 뿐 아니라 강사의 자격기준 및 표준교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번(현행 교과목에 이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 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의 경우, 필수교과목 지정보다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장애아보육실습, 특수아 행동지도, 가족지원, 특수교육학개론, 통합교육이 꼭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번(교과목의 60% 정도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의 경우, 대면 교육을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교육기관 및 강사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면 교육시 반드시 실제 모의수업, IEP 계획의 실제 등 구체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실습과 워크숍 수업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 출석 및 대면 교육은 현직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쌍방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면교육은 60% 이상으로 보다 확대해야하고,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5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과정’을 개설)의 경우, 경력교사들의 욕구에 맞는 과목별 선택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통합반의 일반 보육교사들도 심화과정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교과목 이수가 끝나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7번(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촉진을 위해 직무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지급액을 상향)의 경우, 수당보다는 호봉체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현행 체제라면, 유특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직무수당을 같게 하고 자격수당을 달리해달라는

의견, 유특교사도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수당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만약 유아특수교사에게 직무수당을 높게 주고자 한다면, 어린이집에서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유인책에 대해서, 오히려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주어도 회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아특수교사를 어린이집으로 유입하기보다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교사를 심화과정과 승급교육을 통해 1급으로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함. 유아특수교사는 직무수당이 상향되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근무조건과 형태가 다르므로 회피함. (전문가 3)

반면, 전문가들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한 3번(교과목 영역별 선택제를 추진하여,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을 높임)과 6번(장애반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이수 시 50-60만원 가량의 직무수당을 지급(일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장애반을 담당하면 30만 직무수당 지급), 8번(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 9번(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에 관한 추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번(교과목 영역별 선택제를 추진하여,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을 높임)의 경우, 교과목 영역별 선택제보다 기본 교과목을 정확히 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로, 선택제를 하기 전 공통필수교과목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6번(장애반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이수 시 50-60만원 가량의 직무수당을 지급(일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장애반을 담당하면 30만 직무수당 지급)의 경우, 장애통합반 일반교사와의 형평성의 문제, 교사 전체의 보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의 액수는 전체적인 보수상황을 고려할 필요 있음. 30만원을 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어 일반 보육교사 10호봉이 일반교사이고 2년제 나와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바로 맡을 때 30만원 주는 것이 통합반 일반교사에 비해 8과목에 대한 추가과목 이수치고는 상당히 센 편임. 심지어 통합 어린이집 같은 호봉 원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경우도 생김. 분명히 추가로 이수하는 과목이 있으니 수당이든 월급이든 더 주어야 하나 일반교사 급여 호봉

차이가 너무 적다 보니 30만원이 10호봉 수에 해당하는 거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은 아님.
(전문가 4)

8번(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 (10만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가장 크고 의견도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면, 인력을 유인하기 어렵고, 현장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만약 이를 시행하려면 1-2년 간 예고를 하고 진행해야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아어린이집에서의 자격 수당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 일단 장애아어린이집에서의 모든 교사가 자격을 갖추는 것은 협력의 의미가 크고 장애아 어린이집이 기피 대상이었던 어린이집에서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임. 장애 아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최근에는 장애 아동이 아침 당직 시간이나 야간 연장까지 이용하는데 교사 모두가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를 당직 때 보는 것이 교육권을 실행하는 긍정적 역할이나, 그렇지 않다면 아침저녁 당직 때 자격자를 별도로 구해야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계속 장애아 보육의 헤게모니가 될 것임. (전문가 5)

9번(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의 경우,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선이 완전히 된 후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현재도 배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자격양성체계 개선안과 별개로 시급히 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 수급문제로 인한 반 또는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도 배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인성이 의심되는 교사를 배치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됨.
(전문가 6)

한편, 이 조항과 관련하여, 특수교사 배치 비율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가 필요하며, 비율은 장특법 상의 기준인 3명당 1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다.

2) 자격양성 관련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 이수 과목 수와 학점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선 필수와 선택 과목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 필수과목은 8-10개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가학점 불필요 5명(직무 승급과정에서 필요, 질을 높이자는 의견), 12과목(36학점) 6명, 16과목(48학점) 11명이었으며, 소수 의견으로, 5학점(15학점), 8과목(24학점), 17과목(51학점), 20과목(60학점), 60학점이상(135학점의 반)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3학점만 추가(특수아동 진단 및 평가), 실습 4학점만 추가와 같은 소수 의견도 있었다. 16과목(48학점)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는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다음의 과목들에 모두 포함된다.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긍정적행동지원지도, 정신지체아지적장애아교육, 지적체부자유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교육, 특수교육 측정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이상 16과목 48학점 (전문가 7)

또한 학점이 늘어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법, 제도, 철학과 같은 소양교육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적 관점의 과목이 주로 많음. 학습을 너머 장애아동 복지를 위한 법, 정책, 제도, 철학 등에 대한 소양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8)

그 밖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목들은 장애학, 관찰일지 등 작성법, 개별화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제로 나눌 것, 장애아인권교육, 유아 특수공학, 영아조기중재, 장애영유아통합교육론, 정서장애아교육(행동장애, ADHD-기존 특수아행동지도를 보강해도 무방) 등이었다. 한편,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는 다른 루트로 접근하는 교사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교과목에서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 제도(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4년제로 교육부 특수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3년제로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등 너무 다른 상황인데 임의로 추가학점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전문가 9)

정신지체아교육은 지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은 정서·행동장애아교육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학습장애아교육은 영유아 특성상 불필요한 과목으로 삭제를 요청 (전문가 10)

또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에 필수교과목으로는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단 및 평가,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교육이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애의 이해나 장애학, 특수교육철학,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특수교육학개론, 대상자 파악하기(물리적, 생리적, 환경적, 의료적 요소)-지원체계 수립하기 등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보수교육 관련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을 개설한다면, 시간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판단을 조사한 결과, 40시간 이상~80시간 이하가 37명으로 전체 40명 중 92.5%였다. 특히 40시간에서 80시간 미만은 29명으로 72.5%였다. 따라서 تلف이 조사에서 모형안 전반에 대한 타당성이 대다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지지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8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2명으로 5.0%였고, 40시간 미만은 0명이였다.

〈표 IV-2-3〉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시간 구성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척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40시간 미만	0	0.0	2.39	0.70
4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	29	72.5		
80시간	8	20.0		
80시간 이상	2	5.0		
기타	1	2.5		
합계	40	100.0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한다면, 교과목 구성 및 방향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동의하였다.

실제 및 워크숍 중심으로 하고,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실행 보고서 제출 또는 사례 발표 시간 제공) (전문가 11)

교육대상(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이론 20%, 실제 80%로 교육 방법에 있어서 교사들 간의 실제 사례 중심의 워크숍, 토론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무엇보다 사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진 인력풀 구성 및 강사진 워크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전문가 12)

사례위주와 토론회수업 등. 부모상담이나 부모와의 관계 등도 좋겠음. (전문가 13)

일반이론보다는 장애아보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작성, 상호작용방법, 팀티칭방법, 행동지원방법, 부모상담기술, 사례 연구 등을 ‘특별직무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연계기술, 교사 간 협업, 교수 기술, 진단평가, 부모상담 등의 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함. (전문가 14)

일반영유아와 함께 하는 교실 내 통합활동에 대한 실제적 접근기술과 부모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망을 활용하는 방법, 협력교사와의 실질적 활용프로그램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전문가 15)

내용 면에서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대학원처럼 토론회와 실제적이며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16)

실제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방안 (전문가 17)

또한 대집단 강의 보다 소그룹 집합교육, 실무 워크숍, 컨설팅 형식, 슈퍼비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비대면 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40시간 이론교육 + 워크숍 & 컨설팅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전문가 18)

장애통합보육 실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소그룹의 워크숍 형태로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올바른 실재를 배우고 서로 토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 (전문가 19)

3년 동안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노하우와 의문점 해결 및 잘못 적용된 교육방법의 피드백 등이 필요함. 3시간 수업일 경우 예) 이론정리(1시간)+ 모둠별 실제 사례 토의 방법(1) +

동료 및 강일자 피드백(1)으로 구성 (전문가 20)

워크샵 & 컨설팅 교육 시 진단평가와 IEP실행을 점검하고, 교사의 장애 이해와 교수 방법을 점검하여 평가 부분에 대한 수정과 재평가과정 필요(시험실시) (전문가 21)

대집단 강의보다 소규모 집합교육 및 실무적인 워크샵 형태의 진행을 고려, 자율장학이나 컨설팅 역량을 강화 (전문가 22)

교수학습 공동체형식으로 자조 모임을 지역마다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전문가 23)

실제적인 교수지도법: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수 있는 교과목= 슈퍼비전 방식 (전문가 24)

필수과목(6과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넣고 토론이 1시간씩 들어갔으면 함. 그리고 한 과목은 사례 발표 시간으로 할 필요 (전문가 25)

또한 특별직무교육과정인 만큼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과 직업의식 강화, 전문적인 진단 방법이나 치료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사자의 욕구에 근거한 내용선정을 중요하게 보았다. 교사들 역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보육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교사들은 경력 3년 차에 가장 힘든 것이 [개별화교육], [가족지원], [문제행동지도] 라고 함.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 위의 내용을 심화하여 연수하는 것이 필요 (전문가 26)

개별화 교육계획안에 따른 일과 수정 등 실제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 필요 (전문가 27)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놓고 교사의 요구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전문가 28)

교육의 내용에서는 영아와 장애아동인권에 관한 교육, 장애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통합반 일반교사와의 관계 확립, 지역 및 기관연계의 실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아중 위험군 선별에 필요한 과정을 구성 (전문가 29)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전문가 30)

장애아부모교육, 부모상담, 통합반 일반교사와 관계 확립에 관한 프로그램(전문가 31)

교사 간 협력의 실제/ 부모와의 협력 실제/ 지역과의 협력 실제/ 기관연계의 실제 등으로 구성되길 바람. (전문가 32)

교사 간 협력과, 가족지원 체계, 마을과의 연계방법 이것은 현재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본다. 특히 유아가 학교를 가게 되는 시기면 교사의 정보 부족과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실제 유예 아동이 생기는 이유임. (전문가 33)

장애반 경력자에 대한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한다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을 강력 추천함. 혼합연령을 통한 놀이 중심!!!! 강추. (전문가 34)

소수 의견으로 승급시험을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승급시험을 꼭 봐야 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함. (전문가 35)

대면 수업이 어렵다면 과제를 제출, 시험의 형식으로 또는 소그룹 화상 형식으로 개별 심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완되었으면 함. (전문가 36)

그 밖의 추가 의견을 정리하면 유특교사와 원장도 보수교육을 받고 보육의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장애 관련 전문성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전문가 37)

유아특수교사들도 승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보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목을 배정해야 함. (전문가 38)

또한 보수교육기관을 장통합, 한국보육진흥원, 자율학습공동체 학습 인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정해주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만한 교육과정을 지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장통합 주관 교육 이수이 나 자율학습공동체에서의 연구성과, 보육진흥원의 컨설팅 등을 추가시간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함. (전문가 39)

아울러 3년 심화교육 이수 후의 상황에 대한 의견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심화과정 후 직무수당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3년 심화교육 이수 후에는 4년차부터는 매년 일정시간을 집합(1일 8시간 정도), 사이버교육(8~16시간)으로 수강하도록 하면 흐름이 끊어지지않을 것 같음 (전문가 40)

심화과정 후 수당이 높은 것 같습니다. 1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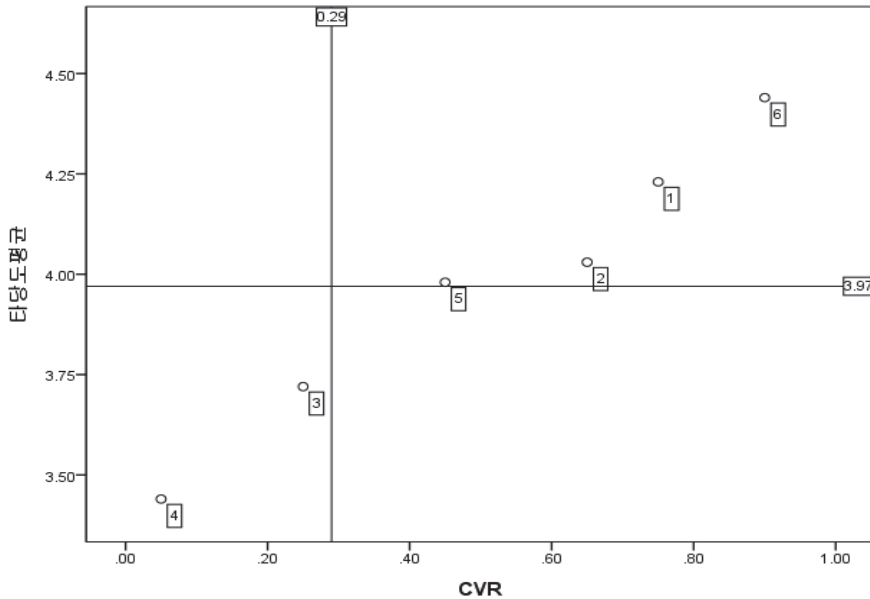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에 관한 전문가 의견

Lawshe(1975)의 기준 40명 때 .29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3번, 4번은 전문가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더불어 타당도 조사결과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1번, 2번, 5번, 6번이 해당되었다. 반면에 4사분면에 3번, 4번이 해당되었다.

〈표 IV-2-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

정책요소군		2차			LFF
		평균	표준편차	CVR	
1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2급 취득 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3년(장애아반 담임)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취득 가능	4.23	0.92	0.75	I
2	장애아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4.03	0.97	0.65	I
3	직무수당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 지급	3.72	1.15	0.25	IV
4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	3.44	1.46	0.05	IV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3.98	1.21	0.45	I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 가능	4.44	0.65	0.90	I
전체 평균		3.97	1.06	0.51	

[그림 IV-2-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안 LFF 분석결과



따라서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1번(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2급 취득 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3년(장애아반담임)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취득 가능), 2번(장애아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5번(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6번(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 가능)의 4개 방안이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방안인 3, 4번 방안은 모두 수당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거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3번(직무수당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 지급), 4번(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을 중심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번(직무수당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을 지급)의 경우,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직위와 직급이 다른 교사간 협력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승급에 따른 수당차이를 두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유특교사와 차등을 두어, 유특교사에게 수당을 차등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2급은 30만원, 1급은 40만원이 적합하다는 의견, 급수가 다르더라도 현재 3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통합반을 함께 담당하는 비장애 유아 담임에게도 직무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통합반을 함께 담당하는 비장애 영유아 담임에게도 직무수당이 매우 요구됨(전문가 42)

자격양성과정이 강화 보완되고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당에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통합학급의 일반보육교사는 장애담당교사와 동일한 수당지급(30만원), 일반학급의 장애아보육시 수당 차등지급(20만원), 일반학급의 일반아동보육시 자격수당으로 지급(10만원) (전문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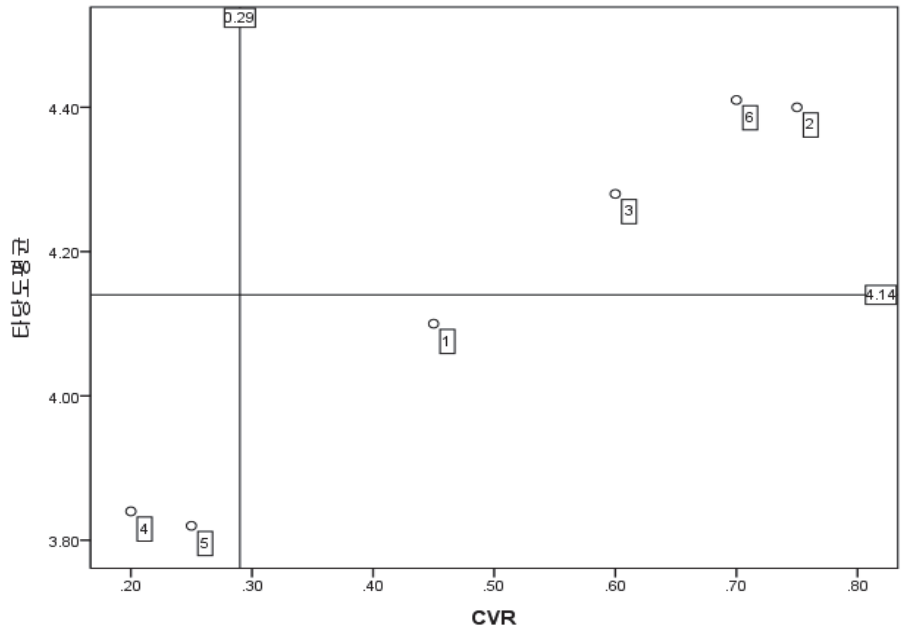
라.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Lawshe(1975)의 기준 40명 때 .29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해당된 6개 항목 중 1번, 4번, 5번은 전문가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타당도 조사결과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2번, 3번, 6번이 해당되었다. 반면에 3사분면에 1번, 4사분면에 4번, 5번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개선안 9개 중 개선안으로서 타당하고 전문가의 일관된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서 최우선순위는 2번(특수보육교사 2급과 1급체제로 운영하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과 3년 현장경력제도 운영), 3번(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 이는 1, 2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6번(「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 구성)의 3개 방안이었다.

〈표 IV-2-5〉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정책요소군		2차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1	학과제로 운영(3년제+심화과정)하고 유아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135학점(전공 86학점+교직)을 기본으로 운영	4.10	1.06	0.45	Ⅲ
2	특수보육교사 2급과 1급체제로 운영하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과 3년 현장경력제도 운영	4.40	0.87	0.75	I
3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 2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4.28	0.99	0.60	I
4	직무수당으로 특수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을 지급	3.84	1.17	0.20	Ⅳ
5	수당제가 아닌 호봉제로 전환	3.82	1.24	0.25	Ⅳ
6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 구성	4.41	0.95	0.70	I
전체 평균		4.14	1.05	0.49	

〔그림 IV-2-3〕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LFF 분석결과



전문가들의 긍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방안인 3, 4번 방안은 급수제 도입안과 마찬가지로 모두 수당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거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항목들이었다. 3번(직무수당으로 특수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을 지급), 4번(수당제가 아닌 호봉제로 전환), 1번(학과제로 운영(3년제+심화과정))하고 유아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135학점((전공 86학점+교직)을 기본으로 운영)은 학점을 중심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봉제의 경우, 독립된 호봉체계 신설하는 경우 일반교사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독립된 호봉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같이 보육교사도 2년제 4년제 등 호봉제로 가고, 특수보육교사도 호봉제를 시작하는 것이 적합 (전문가 44)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채용하려고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만약 국가에서 호봉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됨. (전문가 45)

수당의 경우, 특수보육교사 체계로 가면 4-5년 후 쯤이라 수당 액수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 승급에 따른 수당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경력이 많아지면 호봉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승급에 따라 수당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 급수와 경력에 따라 수당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통합반 보육교사들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였다.

학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보통합을 고려할 때 하나의 학제로 운영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현(안)은 학과제로 운영하는 것만 타당하다는 의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받으려면 51학점이 필요하고, 여기에 특수교육 관련 24학점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가 발급되므로 현행 안을 유지하는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3년제나 심화과정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가 아닌 2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새로 진입하는 장애통합교사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할 수 있지만 현재 현장의 교사들을 어떻게 진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

01 개편 방향

02 정책과제

V.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

1. 개편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영유아 담당 유아 교사의 자격·양성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뉘어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확인해 주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의 학과제로 졸업 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하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현재 많이 확보되고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는 한해 배출되는 수가 약 200명으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까지 배치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숫자이다. 교육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방안과 맞물려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나고, 신설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를 확보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장애영유아들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 장애가 경감되거나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질은 일반교사보다 높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은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어있는 체계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접근성은 높으나, 자격양성체계가 학점은행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교사양성체계의 공식 루트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일반영유아와는 달리 만3~5세 유아들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배치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장애유아들이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기관 격차의 문제를 넘어 장애 유아의 기본권을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에 대해 부처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이다. 또한 양질의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기관의 구조적 질을 결정하며, 이러한 질적 차이들은 결국 장애영유아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17)에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조항을 삭제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간주 조항 삭제 방안에 대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유아특수교사, 부모 포함)은 반대하고 있으나, 유아특수 관련학과 교수들과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찬성 의견을 내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위의 연구에서 간주 조항 삭제는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주 조항 삭제 문제는 여전히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문제, 장애영유아 교육권의 문제 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 어떤 조치도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조 1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이 삭제될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의 배치가 더 어려워지고, 장애유아 관련 유·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육 영역에서는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한 학과제 도입이나, 유보통합/유보격차 완화 정책, 만 4-5세 의무교육 정책 등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정책에서 향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이다. 유보통합, 의무교육 정책 등은 범 부처가 나서야 하는 정책이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학과제 도입 등도 보육계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초 유아교육의 구조적 개편을 포함하는 유보통합이나 학제개편(의무교육화)의 환경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과제 개편을 염두에 둔 장애영유아 교사 급수제도나 특수보육교사제(가칭) 등의 정책을 가정하여 장애영유아

17) 김기룡 외(20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nise.go.kr/ebook/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01228_095358&pagenum=

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에서 3단계 모형으로 다루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40명은 이에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3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2단계 급수제 도입이나, 3단계 특수보육교사 제도들은 장기적으로 학과제 도입과 연계해야 하거나, 자격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므로, 또 다른 정책결정과정의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인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현장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특수교사가 필요하며, 여전히 장애영유아반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아특수교사 배치의 문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정책이다. 결국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정책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유아특수교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 현행제도 개편 방안

이상의 연구의 목적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현행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1] 현행 제도 개편 방안 예시

〈정책목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 제고	
단계(안)	1단계
정책영역	현행 제도의 개선(안)
주안점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교과목(학점)을 추가하고, 실습과 대면교육 강화 •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 개설
정책 대상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자격 양성	• 현행 16과목(48학점) 과목 추가 • 필수과목지정(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단 및 평가,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교육) • 대면교육 60%
보수 교육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 4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 사례 및 실습 중심(실제 및 워크숍)

즉,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정책을 유지하되, 교과목(학점)을 추가하고, 실습과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특별직무교육을 개설하여 기존의 직무교육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과목을 늘리고, 실습과 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1-2과목을 수강하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현행 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습과 대면교육이 강화되어야 교사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음에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추후 현장참관과 실습을 강화하게 되었을 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담당 실습 기관이 부족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일반담당, 장애담당 포함) 실습으로 부분 인정해 주는 방법도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장점은 유아특수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의 보육교사가 현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다양한 경험치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좋은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격양성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목 추가 시,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처럼 영역별 교과목 배치, 필수·선택 과목 지정이 필요하며,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교과목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추가교과목과 학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16과목(48학점)' 시간이라고 하였으며, 필수교과목으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단 및 평가', '통합교육',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6과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에 대한 비판도 높았는데, 교과목 운영을 사례 중심, 컨설팅 중심, 소집단, 장학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면교육을 6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수교육의 경우, 특별직무교육의 형태로 40-80시간 정도가 적합하며, 장애반 현직 3년의 경력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사례와 상황 중심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유아특수교사 비율이 높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의견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고, 관점에 따라 의견이 혼재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조항을 1단계에서 삭제하게 되면 유아특수교사 유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2단계 급수제에서는 이 문항의 타당도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이 조항에 대한 삭제의 문제는 교사의 질 제고가 보장된 특정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급수제도의 확립과 같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시점에 이르렀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장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유아특수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유아특수교사는 매년 부족할 것이므로, 유아특수교사 조항을 법 개정에 담는 것은 적합하기는 하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체계가 급수제 이상으로 체계화되어 양질의 교사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행 법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행제도 개편안에서 연구진이 제안한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현재 반을 받지 않아도 자격수당을 받고, 장애반을 맡더라도(일반교사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격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컸고, 일반교사가 장애반을 맡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제도를 개선할 때 수당체계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완하고, 자격 수당을 폐지하고 직무수당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되, 앞서 장애반을 맡는 일반 보육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1, 2단계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보육교사 자격 승급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1단계에서 타당성이 높은 문항으로 유아특수교사에게 직무수당으로

50-60만원을 지급하여 유아특수교사와 타 교사와의 차이를 두어 유아특수교사 유입률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진이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통해 파악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유아특수교사 비율을 살펴볼 때 2015년에서 지금까지 수당을 10만원 정도 높여주었음에도 340명대에서 더 늘지 않는 현상을 살펴볼 때, 유아특교사의 수당을 높이는 정책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30만원 정도가 아닌 약 3배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으므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1단계 현행 제도 개선안은 가장 실현가능하나, 유·보 분리와 교사의 질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므로 땀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1단계 안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장점을 강화하고, 지금보다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교과목 추가, 필수교과목 설정, 인권기반 교과목 구성, 원격수업 콘텐츠 향상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질적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2단계 급수제도로 안착시킬 수도 있다. 1단계는 기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현장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의 8과목을 두 배로 늘리게 된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금의 두 배의 시간을 할애해야하기 때문에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선 향후 3-4년 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자격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권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장이 체제 변화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력들의 경우에는 이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장애아 통합, 장애아 전문)에서 장애반을 담당한 교사들을 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수한 이후에는 상향 조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인 가능하다.

나.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 제안

본 연구에서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안이 제안되었다. 특별직무교육은 40-80시간이 적합하며, 실습과 대면 교육이 강조된 특별직무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의견에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현재 온라인 보수교육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하며, 사례 중심, 컨설팅 중심 등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특별직무교육 과정이 40시간 기준이라면, 이 직무과정의 두 배의 범위 안에서 앞서 제안된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현장의 요구에 알맞게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추천될 수 있겠다.

현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특별직무교육 40시간(20과목) 연수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애아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각 국가의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교사양성과정을 거나 그에 더하여 현직 경력이 있는 교사 중 재교육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행하는 현행 연수과정은 일반 보육교사자격을 소지하고 그에 더하여 특별 연수를 받는 체계는 교육선진국과 유사하는 그 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보장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연수를 받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여 현재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실천적 역량 부분의 보수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격획득을 위한 연수내용이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교사로서의 다양한 배경 및 경력의 교사들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연수내용 및 방법은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담당보육교사로서의 실천적 지식 및 역량을 갖추기에 부족하고 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자발적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을 근거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심화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보육현장의 여건과 현직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시간을 50시간으로 배정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면 교육과 실행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V-1-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 예시(안)

영역	강의명	시간
교수법	1. 교수방법의 실제(감각운동, 치료놀이 등) 2.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2
교육진단 및 교육계획안	1. 교육 진단의 실제	3
	2. 현행 수준 요약서 작성	3
	3. IEP 작성 workshop	3
IEP 적용	1. 일과운영에서의 IEP 적용 실제	4
	2.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IEP 적용 실제	4
	3. IEP 평가의 실제	3
통합교육	1. 통합반에서의 교사 및 전문가 간 협력 방안	3
	2. (비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3
	3. 장애, 비장애 영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 지도의 실제	3
가족지원	1. 부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실제	3
	2. 가족상담의 실제	3
	3. 가정연계 프로그램의 실제	3
→	60% 이상 대면 교육, 30명 이하 소집단 교육)	50시간

2. 정책과제

가. 정책과제 1: 현행 교과목 재구조화

1) 추진전략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제도 개편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상의 교과목 이수기준 상향조정, 필수교과목 지정 등의 개편과 함께, 교과목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개편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자격제도 개선 시 종전 자격기준(8과목 16학점)은 법 개정을 통해 삭제가 필요하다.

2) 추진전략 1-2: 교과목 추가와 필수교과목 설정

원격수업의 특성상 한 학기 8과목 이상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1학기과 2학기를 나누어 16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48학점 정도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필수교과목으로는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교육계획, 특수아 진

단 및 평가, 놀이 상호작용 및 교수법,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교육을 제안한다. 16과목으로는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긍정적행동지원지도, 정신지체아지적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교육, 특수교육 측정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개입 등을 제안한다.

3) 추진전략 1-3: 인권보육 기반 교과목 구성

장애영유아 인권 강화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도 ‘정신지체아교육’이라는 교과목명은 속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의 근본 철학은 인권보육에 기반하도록 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나. 정책과제 2: 특별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통합연수체계 구축

1) 추진전략 2-1: 한국보육진흥원(허브)-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전문적학습공동체(교사) 연수체계 구축

한국보육진흥원을 허브로 특별직무교육과정의 예시를 만들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고, 지역별로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과목과 이수 기간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듣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기관을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습 인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추가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 추진전략 2-2: 원격 및 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 연수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고, 콘텐츠도 다양하지 않아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격수업 시행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보수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면교육을 6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혼합되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원격과 대면을 혼합하여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그룹 화상수업 등으로 원격수업에서 개별성과 쌍방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개편안 지원 정책 제언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공식 루트 확대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공식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학과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앞으로 학과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학과제의 공식 루트에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교육부의 특수교육과와 협력하여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졸업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대학평가의 가산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대안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아동학과 등의 학과에서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학과에서 양질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특수보육제도가 실시되면, 학과 자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수당체계 재설계화 연구 필요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수당체계를 살펴보면, 통합학급의 일반 보육교사와 원장 지원 정책은 적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유아특수교사의 수당이 거의 유사하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의 범위와 대상도 천차만별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러한 지역적 편

차는 교사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차가 높고 낮음에 따른 수당이 차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땀질식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면, 결국 교사들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면담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당을 높이면,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육교사 대상 수당 지급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이며, 어느 쪽을 지급하면, 다른 쪽을 다른 방식으로 보강하는 형식으로 수당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현실 탓이다. 이에 수당지급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3) 범부처 통합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문제는 교육부와외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가능할 것이다. 장애영유아 관련 특수교사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과제는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교사 정책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유아특수교사들을 증원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과 인구절벽의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유아특수학급 확충으로 충분히 장애영유아 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장애유아를 모두 관할하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에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0-2세 장애영유아 보육도 고민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교육부 수준에서 사회정책을 조정하는 역할 기능을 확대하여 유아특수교사 수급 문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간 협업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권의 문제와 유아특수교사 수급 및 배치의 문제는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범부처 통합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팀 또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4) 급수제, 특수보육교사제도 도입에 관한 심화연구 필요

자격양성체계 후속연구로 각 단계별로 보다 정교화하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과정에 관한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급수제, 특수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심화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편은 보육교사 자격 양성체계와 수당제도들과 맞물리므로, 유보 격차 완화,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학과제 도입 등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서 함께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상의 연구들을 진행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단계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의 승급제도 개선탄이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의 경우, 현재 국가자격증 제도가 아님에도 급수별 확인서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자격확인서는 보육교사 2급 또는 1급 소지자가 취득 할 수 있으므로, 선취득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령 개정 시 자격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고시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하면 2급, 3년 경력과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하도록 하여 승급이 가능케 하는 방안은 본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2단계 1급 승급 시에는 현재와 같은 승급교육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양방향, 소그룹 컨설팅 형식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1급과 2급 대상 직무 및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추후 1-2단계 승급교육과정을 정교화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의 측면에서는 급수제가 실시될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수당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안들에 대해서 모두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급과 2급의 수당 차(2급:30만원, 1급: 50만원)로 인해 경력이 3년이 지난 일반교사와 수당 차이가 너무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일반보육교사인 경우 2급, 1급의 급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수당, 급여의 차이는 없는 상황에서 장애영유아교사만 수당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일반 교사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당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급수제도의 경우, 1단계와는 다르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승급 제도를 마련하고 그들의 경력과 역량을 국가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1단계의 질적 개선 단계를 거치고, 급수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급수제도로 안착되기 쉽다. 예컨대,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으로 하고, 현장에서 3년 근무를 하면 1급으로 승급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현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장애반 담임으로 엄격히 한정하도록 하고, 승급 직무과정을 개설하여 1급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1급 자격을 받게 되면 급여와 수당 자체의 인상을 보다 높게 측정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인력들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대체해 주고, 장애반 3년 근무가 인정되면 1급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급수제도를 바로 실행한다면, 1단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도록 기존 제도를 충분히 개편하고 급수제도를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급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제도 개선이 정착된 시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급수 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3단계 안인 (가칭)특수보육교사 제도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학과제 도입과 연계하여 고민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학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화되는 정책환경을 고민하면서 제도 신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진이 제안한 3단계 모형에서 1, 2단계까지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확인서 제도 및 급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3단계는 1-2단계와 차원이 다른 별도의 트랙을 개설하는 안이다. 3단계에 들어서면 학점은행제에 대한 별도 트랙으로 유

지해야 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점은행제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을 모두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단계는 유아특수교사 제도와 같이 (가칭)특수보육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 현재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차별없는 교육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3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만 교사양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 단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법, 1-2단계 동안 준비하여 학과제 시행 시점에 알맞게 자격 양성체계 개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배출하는 유아특수교사와의 질적 우위 논쟁이 있을 것이고, 차별없는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 교육,보육을 더욱 이원화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에 특수수당 인상이나 호봉체제의 변경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계속 어린이집에 유치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가칭)특수보육교사 제도가 보완되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3단계 수당체제에서 호봉체제로의 개편안은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호봉체제가 다르다는 부분은 일반교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특수교사 배치’를 삭제하는 법안을 만들려면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단계 ‘학과제’ 마련은 교육부가 개입되는 일이어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아동학과나 보육학과의 이수 과목에 특수교육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추후 3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별도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있는 것이 아닌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추가 교육을 받을 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급수는 동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 및 급수는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 및 급수는 「초·중등교육법」 안에서 별도의 자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 및 급수의 경우 다른 초중등 교사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보육교사를 도입 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격관리체계 안에 포함되는 별도의 양성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3단계 안은 1-2단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3단계 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1-2단계만으로는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할 수 없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로는 앞으로도 질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아특수교사와 같이 학과제를 통해 특수보육교사들을 공식 루트로 양성하도록 하고 추후 유보통합을 고려하더라도 유특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3단계 안을 실시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모시기를 더 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육계에서 자체적으로 질 높은 특수교사를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길러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단계는 보건복지부의 학과제 개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새로운 직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3단계 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육부 유아특수교사의 정원과 배치를 여전히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보를 따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수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1, 2단계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야 하고, 종전의 제도에서 자격을 획득한 교사들을 구제하여 특수보육교사 2급으로 유입하는 정책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의 보육 교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은 특수보육교사제도를 반대할 수 있다. 어차피 유보통합을 계획한다면, 유아특수교사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따로 제도를 만든다면 정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력이 없고,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3단계 안은 현재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특수교사의 본질을 고려할 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보육교사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보육교사 2급과 1급 체제로 운영하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과 3년 현장경력제도를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 2단계의 교육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a).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현황(2015-2020).
- 교육부(2020b).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국가인권위원회(201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0집 [2017].
- 국립특수교육원(2002). 미국의 특수교육: 텍사주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2020. 3. 27.).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기룡 외(20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nise.go.kr/ebook/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01228_095358&pagenum=에서 2020. 12. 28. 인출
- 김승현·원종례·안의정(2016).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의 사전실습 프로그램 모형 개발. **특수교육**, 15(1), 51-71.
- 김영숙(2008). 장애아보육정책에 따른 '장애아보육전문가(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311-328.
- 김효선(1995). 미국의 특수교육교사 양성체계. 국립특수교육원 세미나 자료집. 5-9.
- 남숙·곽승철(2019). 독일 특수교육 교사양성과정에 통합교육의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36(4), 21-48.
- 노진아(2007). 유아특수교사의 양성방안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1), 1-20.
- 박창현·김근진·이은혜·배울미(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박현옥·강혜경(2018).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실습과정 탐색: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7(4), 87-109.
- 박현옥·최민숙(2005). 국내 유아특수교육과 전공 교육과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5(2), 5-25.

- 보건복지부(2020a).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 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0b).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2019.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표준교과개요 개발 연구.
- 안의정·원종례·김승현(2017).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예비보육교사 사전실습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H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7(2), 55-77.
- 이경진·최진영·최나영(2014).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과목표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5), 807-827.
- 이미션·조광순(2006). 미국의 특수교육 지원조직 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501-522.
- 이순자·김병진·박유정(2017).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교사 양성 교육과정 비교분석: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시사점. **유아교육학논집**, 21(3), 83-113.
-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황원(2013). 미국 장애인 교육법(IDEA)상 장애 영유아 교육서비스에 대한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143-161.
- 정영조(2007).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조운경·송정(2012). 어린이집 원장의 장애아 보육 실행 어려움과 정책지원 요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95-118.
- 한국보육진흥원 (202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내부자료.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1995). What every special educator must kn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eparation and

- certifica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Hillenbrand, C. & Melzer, C.(2014). Vortrag der Professionalisierung fuer inklusive Bildung: Wirksame Qualifikation von Lehrkraeften aus Bundesfachkongress Aus-, Fort- und Weiterbildung am 27/28.06. 2014 in Wuerzburg erlaeutert.
- KMK(2017). Sachstand in der lehrerbildung. Allgemeinbildendes schulwesen (Stand: 07.03.2017). Berlin: Autho.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 Nam, S. (2017). Inklusive lehrerbildung fuer sonderpaedagogen und regelschullehrkraefte im primarbereich in bayern und korea.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uerzburg.
- Universitaet Bremen(2018a). INKLUSIVE PÄDAGOGIK. Retrieved from <http://www.fb12.uni-bremen.de/de/inklusive-paedagogik.html> on January 04. 2019.
- 令和2年度・特別支援学校教員資格認定試験・受験案内(特立行政法人教職員支援機構)(2020년도 특별지원교직원 자격시험 수험안내(독립행정법인교직원 지원기구))(<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에서 2020. 10. 6. 인출)
- 玉村公二彦外5人(타마무라 쿠니히코외 5인). 「特別支援学校教員免許と障害児教育養成カリキュラムー特別支援学校1種免許を中心としてー」(「특별지원학교교원면허와 장애아교육양성커리큘럼-특별지원학교1종면허를중심으로-」). pp. 272-273. (<https://www.nara-edu.ac.jp/CERT/bulletin2007/b2007-H18.pdf>에서 2020. 10. 6. 인출)

【참고 사이트】

- 뉴욕고등교육국 홈페이지. <http://www.highered.nysed.gov/tcert/certificate/certprocess-search.html>에서 2020. 11.5 인출
- 독립행정법인교직원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s://www.nits.go.jp/menkyo/shiken/2020/>에서 2020. 11. 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_____.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서 2020. 8. 26. 인출

_____.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서 2020. 8. 26. 인출.

_____. <http://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에서 2020. 8. 26. 인출

_____.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에서 2020. 8. 26. 인출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410> 에서 2020. 11. 6. 인출

_____.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0258130> 에서 2020. 11. 6.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에서 2020. 8. 26. 인출

연성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yeonsung.ac.kr/ecse/cms/FR_CON/index.do?MENU_ID=40 에서 2020. 11. 12. 인출

_____. https://www.yeonsung.ac.kr/ecse/cms/FR_CON/index.do?MENU_ID=100 에서 2020. 11. 12. 인출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ctc.ca.gov/credentials/req-teaching> 에서 2020. 11. 12.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3.do> 에서 2020. 8. 1. 인출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uw.ac.kr/nrtr/cn/connection/selectEduProcList.do?mi=1312> 에서 2020. 11. 12. 인출

_____. <https://www.knuw.ac.kr/nrtr/cm/cntnts/cntntsView.do?mi=1306&cntntsId=1048> 2020. 11. 12. 인출

_____. <https://www.knuw.ac.kr/nrtr/cn/connection/selectEduProcMajorList.do?mi=1314> 에서 2020. 11. 12. 인출

Teaching Certification 홈페이지. <https://www.teaching-certification.com/early-childhood-special-education-certification.html> 에서 2020. 9. 25. 인출

【참고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2호, 2016. 12. 2., 일부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 2020. 7. 8.]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文部科学省 教育職員免許法 (문부과학성 교육교원면허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4. 1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록

부록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델파이 조사 패널 명단

	이름	소속
1	김○○	연성대 유아특수재활학과
2	조○○	중부대 유아특수교육과 겸임교수
3	최○○	광운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
4	마○○	동서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겸임교수
5	강○○	성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6	원○○	전)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영유아보육과 교수
7	이○○	고양시 마두 어린이집 원장
8	이○○	서울한영대학교 유아특수재활학과 교수
9	권○○	선경성남 장동지역위원
10	이○○	시립모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
11	조○○	파주교남시냇가 거주시설원장
12	김○○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이사
13	권○○	대구경산 밝은 어린이집 원장
14	이○○	대화소망어린이집
15	김○○	베다니어린이집 원장
16	손○○	시립고양어린이집 원장
17	조○○	구립단비어린이집(장애아전문)
18	백○○	장군봉어린이집(장애아통합)
19	장○○	꿈고래어린이집 유특교사
20	구○○	서호어린이집(장애아전문)
21	최○○	경민대 아동보육과 교수
22	안○○	이화여대 유아특수교육과 강사
23	송○○	고양시립원흥어린이집 원장
24	손○○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교수(유아특수전공)
25	전○○	시립수지어린이집원장
26	김○○	성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7	문○○	한사랑어린이집 특수교사
28	박○○	꿈고래어린이집 원장

	이름	소속
29	윤○○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30	이○○	전국장애아보육협의회 부모대표
31	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32	신○○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
33	류○○	부암어린이집 원장
34	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35	김○○	우석대학교 교수
36	함○○	알프하임 어린이집 교사
37	이○○	거여리본타운어린이집 교사
38	조○○	개구리어린이집 교사
39	김○○	인천 부평맑은내어린이집 원장
40	서○○	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

부록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1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현황과 자격, 양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지는 크게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문제점,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개선점 3) 기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이며, 1차 의견을 수합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11월 5일(목) ~ 11월 9일(월)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1차 조사지는 11월 9일(월)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11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김 민 주(국제통일연구팀 연구원) mjkim@kicce.re.kr/ 02-398-7766
- 연구책임 : 박 창 현(국제통일연구팀 부연구위원) pch0407@kicce.re.kr/ 02-398-7789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아 특수교사** : '특수교사(유치원) 1급', '특수교사(유치원) 2급' 인 특수교사

* 특수교사 인정수료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
으로 인한 인정자격 소지자(장애아 특별직무교육 이수 체크된 교사)

②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 직위가 보육교사이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
서' 소지자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의 문제점

-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의 문제점을 기술해주세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
- 2)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어렵거나, 이직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 주세요.

2.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 체계의 개선방안

	항목	동의정도				
		동의정도 낮음		↔	동의정도 높음	
		1	2		4	5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종전의 이수 교과목(2012.8.4.이전 편입학한 경우, 8과목 16학점이 수)을 어느 시점에서 종료할 필요가 있음(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등 특수교육과 관련이 없는 과목이 존재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현재 이수 교과목(2012.8.5. 이후 편입학한 경우)에서 장애아교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실습경험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현재 이수 교과목을 장애유형별, 수준별, 연령별 차이를 기준으로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현재 이수 교과목에서 대면 수업 및 모의 수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급수제(1,2급)를 바꾸기보다 현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항목	동의정도				
		동의정도 낮음		↔	동의정도 높음	
		1	2		4	5
6	급수제 개설이 필요하다면, 보육교사 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발급후 3년 후 1급을 받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7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가 급증하였으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통합반을 경험한 교사로 한정하여 자격확인서를 줄 필요가 있음.					
8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기본 자격 기준을 보육교사 2급이 아니라 보육교사 1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9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때, 실습을 위한 휴직시 대체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시 교과목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1. 위의 문항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추가 의견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추가의견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근무기관: () (예시: 육아정책연구소)
직책: ()
최종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박사(), ④기타()
최종학위취득전공명: () (예시: 유아특수교육 등)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성별: ①여자(), ②남자()
연령: 만 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2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현황과 자격, 양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지는 1차 조사의 의견을 기초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3단계 개편 모형 구성(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11월 17일(화) ~ 11월 20일(금)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1차 조사지는 11월 20일(금)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11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김민주(국제통일연구팀 연구원) mjkim@kicce.re.kr/ 02-398-7766
- 연구책임: 박창현(국제통일연구팀 부연구위원) pch0407@kicce.re.kr/ 02-398-7789
- 공동연구진: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경희(증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 본 델파이 조사지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단계 모형(안)(3단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 설문문항은 각 단계별 설계모형을 정책영역(정책대상, 주안점, 자격양성, 보수교육, 수당, 법개정,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지원)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어려운 분야의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 ▷ 최종적인 설계모형(안)은 응답해 주신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설계모형(안)

- ▷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설계모형(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 1단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과목을 늘리거나, 실습과 대면교육을 강화하거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2단계는 급수제 도입 안으로 1단계가 안착되면 2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하면 2급, 3년 경력과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면 1급을 취득하도록 하여 승급이 가능케 하는 방안입니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와는 달리, 유아특수교사 제도와 같이 (가칭)특수보육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단계(안)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정책 변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 규정 삭제 가능성, 학과제 개편) 등을 고려하여 취사 선택 가능한 안임.

〈정책목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질 제고

〈정책변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 삭제 가능성, 학과제 개편

단계 (안)	1단계	2단계	3단계
정책 영역	현행 제도의 개선(안)	급수제도 개설(안)	특수보육교사제(가칭) 신설(안)
주안점	•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교과목(학점)을 추가하고, 실습과 대면교육 강화 •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 개설	• 1단계 현장 정착시, 급수제로 변환 가능	• 종전 제도 폐지, • 학과제 실시와 병행 • 유아특수교사제도와 유사 • 특수보육교사가 영유아 모두 담당

단계 (안)	1단계	2단계	3단계
	현행 제도의 개선(안)	급수제도 개설(안)	특수보육교사제(가칭) 신설(안)
정책 대상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0-6) - 유아특수교사(3-6)	특수보육교사(가칭)(0-6)
자격 양성	- 현행 8과목(24학점) 과목 추가 가능성 - 필수과목지정(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 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3-4과목) - 교과목 영역별 선택제 - 대면교육 60%	-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3년 경력과 특별직무교육을 승급과정으로 변환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 1급 개설 가능	학과제/3년제+심화과정 ※ 유아특수교사 4년제 135점(전공 86학점+교직)
보수 교육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2급 대상 직무 및 승급 교육과정 개설	유아특수교사제도와 유사
수당	- 자격수당 폐지 - 직무수당 - 특수교사 50-60만원 지급(유인책)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이수 시 50-60만원 수당 지급	- 자격수당 폐지 - 직무수당 2급 : 30만원 1급 : 50-60만원 지급 - 장애아반 담당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이수 시 50-60만원 수당 지급	- 수당제에서 호봉제로의 개편 - 개편 또는 1,2단계 유지
법개정 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내용 추가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를 구성
예상 되는 문제점	- 자격수당 폐지 문제 대한 반발 - 현재 특수교사, 치료사 모두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음.	일반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다른 방법으로 보정 필요)	- 유아특수교사와의 질적 우위 논쟁은 여전한. - 일반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 지원	- 통합학급의 일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고민 필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 공식 루트 확보 - 실습기관 확보 필요		

1. 위의 모형(안)에서 설정한 **단계 구성과 각 단계별 영역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하다

1-2. 위의 모형(안)에서 설정한 **모형의 단계 구성과 각 단계별 영역 구성에 대한** 및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I. **현행 제도의 개선(안)**

▷ 다음은 1단계 현행 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위 정책영역별로 개선(안)에 대한 **타당도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선(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영역	단계 (안)	1단계	타당도				
		현행 제도의 개선(안) 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1 자격양성	주안점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에서 실습과 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임.					
	1-1.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이후 ‘교과목’으로 통일)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 필요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1-2. 현행 교과목에 이수 필수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1-3. 교과목 영역별 선택제를 추진하여, 학습자의 교과 선택권을 높임.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1-4. 교과목의 60% 정도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 원격수업의 한계를 보완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정책 영역	단계 (안)	1단계	타당도				
		현행 제도의 개선(안) 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2 보수교육		2-1. 장애인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 수당제		3-1. 장애인 3년 경력자를 위한 특별직무교육과정 이수 시 50~60만원 가량의 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일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장애반을 담당하면 30만 직무수를 지급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2. 유아특수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촉진을 위해 직무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지급액 상향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3.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	①	②	③	④	⑤
4. 법개정 사항		보완 및 수정의견)					
		4-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1-1-1. (자격양성)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에 이수 과목(학점)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 이수 과목 수와 학점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요. (예시) 16과목(48학점) 등)

추가 이수 학점과 과목:

※ 참고사항			
1) 원격수업은 한학기 8과목(24학점)까지 개설이 가능함. 예를 들어 추가하려면, 2학기(48학점)을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2012년 8월 4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1-2-1. **(자격양성)**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8과목(24학점)에 필수교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수교과목을 적어주세요. (위의 참고사항 표 참조)
(예시: 장애아보육실습, 개별화계획, 진단 및 평가, 교수법 등 3-4과목)

2-1-2. **(보수교육)** 토폴이 1차 조사시 보수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장애반 3년 경력자, ‘특별직무교육과정(안)’입니다. 이 예시안에 대한 의견을 강의내용, 교과목 구성, 시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과정 예시안〉

모듈	강의명	시간
1	발달지체 영유아의 이해	총 2시간
2	발달영역별 교수방법의 실제	총 10시간
	1.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2.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3. 인지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모듈	강의명	시간
	4. 적응행동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5. 운동 발달 교수방법의 실제	2시간
3	교육진단 및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의 실제	총 10시간
	1. 교육진단의 실제	4시간
	2. 개별화교육계획 및 실행의 실제	6시간
4	감각운동 안에서의 심리운동 실제	총 3시간
5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제	총 4시간
6	교사 및 가족의 협력	총 5시간
	1. 교사 간 협력의 실제	2시간
	2. 가족지원 및 협력의 실제	3시간
7	보육사례	총 6시간
	1. 보육사례(1)	3시간
	2. 보육사례(II)	3시간

14강 총 40시간

2-1-2-1. 장애인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교육과정’ 개설한다면, 시간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 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80시간 미만 ③ 80시간
④ 8시간 이상 ⑤ 기타()

2-1-2-2. 장애인 3년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해 ‘특별직무과정’ 개설한다면, 교과목 구성 및 방향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 위의 모형(안)에 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추가 의견

III.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안

▷ 다음은 2 단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편안(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위 정책영역별로 개설편안(안)에 대한 타당도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설편안(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영역	단계 (안)	2단계	타당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안) 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주안점		1단계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 정착시, 자연스럽게 급수제로 변환 가능					
1 자격양성		1-1.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2급으로 하고, 2급 취득 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3년(장애아 반 담임)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급 취득 가능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2 보수교육		2-1. 장애인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단계의 특별 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 수당제		3-1. 직무수당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원 지급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2.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시 지급하는 자격수당(10만원) 제도 폐지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정책 영역	단계 (안)	2단계	타당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급수제도 개설(안) 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4. 법개정 사항		4-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6조 1항,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4-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5조 2항 급수 내용 추가 가능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 위의 모형(안)에 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추가의견

IV.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

▷ 다음은 3 단계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위 정책영역별로 개선(안)에 대한 타당도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선(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영역	단계 (안)	3단계	타당도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주안점		종전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보육교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함. 유아특수교사제도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됨. 특수보육교사가 영아부터 유아까지 모두 담당하며, 학과제 개편과 맞물려 운영 가능함.					

정책 영역	단계 (안)	3단계	타당도				
		(가칭) 특수보육교사제 신설(안)항목	① 전혀 타당 하지 않다	② 타당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타당한 편이다	⑤ 매우 타당 하다
1 자격양성	1-1.	학과제로 운영(3년제+심화과정)하고 유아 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135학점(전공 86학점+교직)을 기본으로 운영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1-2.	특수보육교사 2급과 1급제로 운영하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교육과 3년 현장 경력 제도를 운영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2 보수교육	2-1.	장애반 3년 경력자에 대한 승급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이는 1, 2단계의 특별직무교육과 유사하게 운영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 수당제	3-1.	직무수당으로 특수보육교사 2급은 30만원, 1급은 50-60만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3-2.	수당제가 아닌 호봉제로 전환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4. 법개정 사항	4-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특수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급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체계 구성	①	②	③	④	⑤
		보완 및 수정의견)					

▷ 위의 모형(안)에 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추가 의견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근무기관: () (예시: 육아정책연구소)
 직책: ()
 최종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박사(), ④기타()
 최종학위취득전공명: () (예시: 유아특수교육 등)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은? (대학, 연구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근무 기간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성별: ①여자(), ②남자()
 연령: 만 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